
교통건설국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교통정책과



교통신호등 정비사업

사업기간		2025. 7.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도로 일원
사업규모		교통신호기 설치 및 유지관리		
사업목적		교통신호기 유지관리를 통하여 원활한 교통신호 운영 및 교통사고 예방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로교통법		제3조 제1항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1,640,200	2,131,404	1,671,404	0	250,000	210,000	491,204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640,200	2,131,404	1,671,404	0	250,000	210,000	491,204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10,000	
교통신호등 정비사업	401-01 시설비	·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연간단가 : 경정(1,050,000,000원)-기정(840,000,000원)	= 210,000	

□ 예산요구 사유

○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연간단가

- 원활한 교통흐름 확보 및 교통사고 예방을 위해 교통신호기의 안정적인 유지보수 필요
- 신호기 고장 발생 시 교통혼잡 및 2차 사고 우려가 높아, 시민 안전 확보를 위한 유지보수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연간단가

- 교통시설물의 노후화 및 최근 집중호우, 강풍 등으로 인해 시설물의 현장 점검 및 긴급 유지보수 수요 증가로 시설물 관리를 위한 유지보수비 증액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6. : 교통신호등 유지보수 연간단가 착공 및 준공
 - 2025. 7.~10. : 하반기 교통신호등 유지보수 연간단가 착공 및 준공
 - 2025. 10.~12. : 하반기(2차) 교통신호기 유지보수 연간단가 착공 및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2023	- 교통신호기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6개 구역), 하반기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2개 구역) - 노후 교통신호제어기 26대 교체공사 - 노후 시각장애인용 음향신호기 15개소 교체공사 - 장기동 1773번지 일원 신호등 설치공사 - 사우동 보건소 삼거리 횡단보도 이설공사 - 교통신호등 운영 전문기관(도로교통공단) 위수탁 협약 체결
2024	- 교통신호기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7개 구역), 하반기 유지보수 공사 연간단가(2개 구역), 하반기(2차) 유지보수 공사 연간단가(2개 구역) - 교통신호등 운영 전문기관(도로교통공단) 위수탁 협약 체결
2025	- 교통신호기 유지보수공사 연간단가(7개 구역) - 교통신호등 운영 전문기관(도로교통공단) 위수탁 협약 체결 - 교통신호등 전기 계약종별 변경공사 - 교통신호등 노후 철주 교체공사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658,000	1,553,296	-	104,704	
2024	1,640,200	1,498,622	-	141,578	
2025	1,921,404	1,163,185	-	758,219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정책과	교통시설팀장 이재이	담당자	시설8급 김수은	전화	2482
-----	-------	------------	-----	----------	----	------

안전표지 설치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법정도로
사업규모	김포시 관내 법정도로		
사업목적	노면표시,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유지관리를 통한 명확한 교통정보 제공 및 교통안전 확보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로교통법	제2조 16호
		"안전표지"란 교통안전에 필요한 주의·규제·지시 등을 표시하는 표지판이나 도로의 바닥에 표시하는 기호·문자 또는 선 등을 말한다.	
		도로교통법	제3조 제1항
		특별시장·광역시장·제주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광역시의 군수는 제외한다. 이하 "시장등"이라 한다)는 도로에서의 위험을 방지하고 교통의 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호기 및 안전표지(이하 "교통안전시설"이라 한다)를 설치·관리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법	제4조
		①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교통안전시설의 설치·관리기준은 주·야간이나 기상상태 등에 관계없이 교통안전시설이 운전자 및 보행자의 눈에 잘 띄도록 정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390,000	420,000	350,000	0	0	70,000	3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390,000	420,000	350,000			70,000	30,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70,000	
안전표지 설치	401-01 시설비	· 노면표시 설치 및 유지보수 : 경정(30,000원 * 10,333㎡) - 기정(30,000원 * 8,000㎡)	70,000	

□ 예산요구 사유

- 노면표시의 설치 및 유지관리를 통한 원활한 교통소통 및 안전확보
- 노후 및 파손된 노면표시로 인한 교통사고 예방과 민원 처리를 위한 지속적인 유지관리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분기별 김포경찰서의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유턴 설치, 횡단보도 설치, 중앙선 절선 등 노면표시 작업물량 지속 발생
- 본예산에 반영된 물량 조기 소진으로, 민원 처리 및 교통안전 확보를 위해 노면 도색 예산 증액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2.~7. : 노면표시 설치 및 유지보수 공사(연간단가) 착공 및 준공
 - 2025. 2.~12. :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 공사(연간단가) 착공 및 준공
 - 2025. 9.~12. : 노면표시 설치 및 유지보수 공사(하반기) 착공 및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교통안전표지판 교체 및 정비 (연간단가) : 206개 노면표시 설치 및 유지보수(연간단가) 설치 및 유지보수 : 9,252㎡
2024	교통안전표지판 교체 및 정비 (연간단가) : 393개 노면표시 설치 및 유지보수(연간단가) 설치 및 유지보수 : 8,706㎡
2025	교통안전표지판 설치 및 유지보수(연간단가) : 119개(진행중) 노면표시 설치 및 유지보수 (연간단가) 설치 및 유지보수 : 6,401㎡(진행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00,000	355,070	-	44,930	
2024	390,000	372,869	-	17,131	
2025	350,000	101,280	-	248,720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정책과	교통시설팀장 이재이	담당자	시설9급 전성환	전화	2871
-----	-------	------------	-----	----------	----	------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및 관리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도로 일원
사업규모	무인교통단속장비 이설(1대)		
사업목적	관내 무인교통단속장비 설치 및 관리를 통한 원활한 교통환경 조성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로교통법	제4조의2 제1항
		지방경찰청장, 경찰서장 또는 시장 등은 이 법을 위반한 사실을 기록·증명하기 위하여 무인교통단속용 장비를 설치·관리할 수 있다.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0	151,270	133,270	0	0	18,000	151,27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0	151,270	133,270			18,000	151,270	
기타		0					0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8,000	
무인교통단속 장비 설치 및 관리	401-01 시설비	· 무인교통단속장비 이설 : 18,000,000원 * 1대	= 18,000	

예산요구 사유

○ 보행자 안전 및 원활한 교통흐름을 위해 어린이보호구역 내 기존 무인교통단속장비 이설 필요

예산증감 사유

○ 신곡초 앞 어린이보호구역 내 기존 무인교통단속장비 이설에 따른 시설비 예산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9.~10. : 신곡초 앞 무인교통단속장비 이설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2025	정기검사 수수료 납부(58대)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133,270	95,990	-	37,280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정책과	교통시설팀장 이재이	담당자	시설9급 전성환	전화	2871
-----	-------	------------	-----	----------	----	------

어린이 통학로 안전강화

사업기간	2025. 9. ~ 2025. 12.	사업위치	운유초등학교 등 13구역
사업규모	표지판 49개, 미끄럼방지 3,070㎡, 노면도색 1,050㎡, 볼라드34개, 방지턱 8개소		
사업목적	2024년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개선 및 과속방지시설 유지보수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로교통법	제12조제5항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
		시장등은 연도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0	200,000	0	0	0	200,000	20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00,000				200,000	200,000	특별교부금 (교육부) 100,000천원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00,000	
어린이통학로 안전 강화	401-01 시설비	· 어린이 통학로 안전강화 사업(교통안전시설물 설치) - 표지판 : 400,000원*49개 = 19,600 - 미끄럼방지 : 30,000원*3,070㎡ = 92,100 - 노면도색 : 30,000원*1,050㎡ = 31,500 - 볼라드 : 200,000원*34개 = 6,800		
		·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방지턱(속도저감시설) 설치 사업 - 과속방지턱 설치 : 6,250,000원*8개소 = 50,000		

□ 예산요구 사유

- 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을 위한 교육부 특별교부금 교부액(100,000천원) 및 시비(100,000천원) 반영
- 2024년 어린이보호구역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개선사항 중 교통사고가 많은 5개소에 대한 신속한 개선 필요
- 과속차량 예방을 위해 과속방지시설 심의 가결 건 우선 설치 및 유지보수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4. : 교육부 특별교부금 신청
 - 2025. 6. : 교육부 특별교부금(100,000천원) 교부
 - 2025. 9.~12. : 공사 착공 및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2025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정책과	교통시설팀장 이재이	담당자	시설8급 김정현	전화	2327
-----	-------	------------	-----	----------	----	------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정비사업(고촌초)

사업기간	2025. 9.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177(고촌초교)
사업규모	주정차CCTV 1개소, 미끄럼방지 포장, 방호울타리 교체 사업		
사업목적	고촌초등학교 통학로 개선사업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로교통법	제12조제5항
		시장 등은 제1항에 따라 지정한 어린이 보호구역에 어린이의 안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따른 시설 또는 장비를 우선적으로 설치하거나 관할 도로관리청에 해당 시설 또는 장비의 설치를 요청하여야 한다.	
		어린이·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	제5조
		시장등은 연도별계획의 시행에 필요한 소요예산을 우선적으로 편성하는 등 재정상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0	200,000	0	0	0	200,000	20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00,000				200,000	200,000	특교세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00,000	
어린이 보호구역 통학로 조성사업	401-01 시설비	·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정비사업(고촌초) - 주정차CCTV : 1개 * 40,000,000원 - 방호울타리 : 250경간 * 344,000원 - 미끄럼 방지 : 2312.5㎡ * 32,000원	= 40,000 = 86,000 = 74,000	

□ 예산요구 사유

- 고촌초등학교 통학로 구간 중 급경사 및 급커브 구간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사업 필요
- 불법주정차 단속 CCTV 설치로 불법주정차 방지 및 사각지대 위험요소 해소로 교통사고 예방
- 보도 구간 방호울타리 설치 및 경사 구간 미끄럼방지 포장 보수로, 안전한 통학로 환경 조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추진	-	-
일자	2025.11 반영	-	-	-	-	-	-	2025.8.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8. : 재난안전수요 특별교부세(200,000천원) 교부
 - 2025. 9.~12. : 공사 착공 및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2025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8.22.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교통정책과	사업규모	주정차CCTV 1개소,미끄럼방지 포장, 방호울타리 설치 및 교체	본예산 요구액 (천원)	200,000
부기명 (세부사업)	어린이보호구역 통학로 조성사업	사업위치	김포시 고촌읍 신곡리 1177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정책과	교통시설팀장 이재이	담당자	시설8급 김정현	전화	2327
-----	-------	------------	-----	----------	----	------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업무 지원

-교통사업특별회계-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전역
사업규모	단속업무 지원에 따른 사무관리 등 운영		
사업목적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및 버스전용차로 단속에 대한 단속반운영, 과태료 부과, 체납관리, 단속알림 서비스 등 효과적인 계도단속 운영으로 시민불편 최소화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로교통법 질서위반행위규제법	160조 제3항, 161조 제1항 제3호 제16호
		160조(과태료) ③ 차가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 제39조제4항 또는 제60조제1항을 위반한 사실이 사진, 비디오테이프나 그 밖의 영상기록매체에 의하여 입증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6조제1항에 따른 고용주 등에게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제161조(과태료의 부과징수 등) 3. 제160조제2항제4호의3·제4호의4 및 같은 조 제3항(제15조제3항, 제29조제4항·제5항, 제32조부터 제34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만 해당한다)의 과태료 : 시장 등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529,562	397,934	412,734	0	0	-14,800	-131,628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529,562	397,934	412,734			-14,800	-131,628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4,800	
불법주정차 지도단속 업무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 불법주정차 단속 계도 홍보비 : 경정(4,000,000원)-기정(14,000,000원) =	-10,000	
	201-02 공공운영비	· 견인단속 장비 통신 요금 : 경정(0원)-기정(4,800,000원) =	-4,800	

□ 예산요구 사유

- 불법주정차 단속 계도 현수막 설치 감소 및 견인 차고지 보안CCTV 철거로 통신요금 감액

□ 예산증감 사유

- 불법주정차 단속계도 홍보비(사무관리비) : 최근 주정차 단속 문자알림 서비스 활성화 등에 따라 실질적인 단속 계도 홍보물 제작 및 설치 필요성이 감소하여 감액하고자 함
- 견인단속장비 통신 요금(공공운영비) : 견인차고지 위탁 관리 협약 종료로 차고지 보안CCTV 관리 업무가 불필요해짐에 따라 예산 삭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부과 건수 : 184,992건 ·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금액 : 7,937백만원 ·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징수금액 : 7,016백만원
2024	·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부과 건수 : 162,402건 ·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금액 : 6,863백만원 ·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징수금액 : 5,595백만원
2025	·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부과 건수 : 82,860건 ·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부과금액 : 3,462백만원 · 불법주정차 및 버스전용차로 위반 과태료 징수금액 : 2,532백만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744,830	645,800	-	99,030	
2024	529,562	330,538	-	199,024	
2025	412,734	158,934	-	253,800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정책과	주차질서팀장 최규현	담당자	행정7급 손연수 행정8급 이기택 행정8급 윤성호	전화	5577 5578 5576
-----	-------	------------	-----	----------------------------------	----	----------------------

공영주차장 확충 및 유지관리
-교통사업특별회계-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관내 공영주차장
사업규모	공영주차장 61개소, 주차면 5,149면		
사업목적	공영주차장 지속 운영 및 관리, 정비를 통하여 쾌적한 주차환경 제공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주차장법	제8조 제1항, 제13조 제2항
		제8조 ① 노상주차장은 제7조제1항에 따라 해당 주차장을 설치한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관리하거나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으로부터 그 관리를 위탁받은 자가 관리한다 제13조 ②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노외주차장을 설치한 경우 그 관리를 특별시장·광역시장,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 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3,519,830	5,103,821	3,515,821	1,060,000	250,000	278,000	1,583,991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3,519,830	5,103,821	3,515,821	1,060,000	250,000	278,000	1,583,991	
기타		0					0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78,000	
공영주차장 확충 및 유지관리	308-13 공기관등에대한 경상적위탁사업비	. 공영주차장 운영비 - 신용카드 및 교통카드 결제수수료 감액	= -72,000	
	401-01 시설비	. 공영주차장 정비 - 주차노면 도색, 휠스 등 유지보수	= 100,000	
		. 하성 공영주차장 정비 - 화장실 설치 공사(수도, 하수도 및 화장실 설치)	= 250,000	

예산요구 사유

- 공영주차장 울타리 등 시민 안전시설 설치
- 하성공영주차장 개선 공사 시 시민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화장실 신규 설치

예산증감 사유

- 공영주차장별 결제수수료율 변경에 따른 감액
- 노후화된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 민원에 따른 증액
- 하성공영주차장 화장실 설치에 따른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9. : 설계 용역 착수
 - 2025. 10. : 설계 용역 준공 및 공사 착공
 - 2025. 11. : 공사 준공
 - 2025. 12. : 김포 도시관리공사 위·수탁 계약 및 유료 운영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2023	공영주차장 사용료 납부 (공영주차장 기획재정부 및 농어촌공사 부지) / 공영주차장 운영 공영주차장 관리용품 구매 / 장기동 노외주차장 외 4개소 정비공사
2024	공영주차장 사용료 납부 (공영주차장 기획재정부 및 농어촌공사 부지) / 공영주차장 운영 공영주차장 관리용품 구매 / 북변 자주식 공영주차장 주차관제시스템 교체 / 사우자주식 공영주차장 구조 보완 공사
2025	사우자주식 공영주차장 관제기기 교체/ 공영주차장 사용료 납부/ 공영주차장 운영 통합주차관리시스템 보안장비 구매/ 장기2 공영주차장 재포장 공사/ 북변 자주식 공영주차장 보수 및 보강공사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830,272	2,544,615	237,881	47,776	
2024	3,757,711	3,248,931	488,000	20,780	
2025	5,313,821	3,803,717	-	1,510,104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정책과	주차시설팀장 이강제	담당자	시설8급 김인혁	전화	2330
-----	-------	------------	-----	----------	----	------

운양2 공영주차장 조성

-교통사업특별회계-

사업기간	2025. 9. ~ 2025. 12.	사업위치	운양동 1338-5
사업규모	지평식 공영주차장 조성(A=604㎡, 20면)		
사업목적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주차환경 개선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주차장법		제12조의3
적근거	법령 위임규정	제12조의3(단지조성사업등에 따른 노외주차장) ① 택지개발사업, 산업단지개발사업, 항만배후단지개발사업, 도시재개발사업, 도시철도건설사업, 그 밖에 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시행할 때에는 일정 규모 이상의 노외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0	250,000	0	0	0	250,000	25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50,000				250,000	250,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250,000	
운양2 공영주차장 조성	401-01 시설비	. 운양2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 설계비: 20,000,000원 * 1식 - 공사비: 토목공사 및 전기공사(아스콘 포장 주차관제시설 및 부대시설) 230,000,000원 * 1식	= 250,000	

□ 예산요구 사유

- 운양동 모담도서관 이용객 및 인근 주민들의 주차편의를 위해 주차장 부지를 활용하여 지평식 공영주차장 조성

□ 예산증감 사유

- 운양2 공영주차장 조성 시설비 반영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적정	-	-	-
일자	2025.11 반영	-	-	-	-	-	2019.06.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9. 6. : 공유재산 심의 완료
 - 2019. 11. : 부지 매입
 - 2025. 9.~10. : 실시설계 용역
 - 2025. 10.~12. : 주차장 공사 착공 및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2025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8.22.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교통정책과	사업규모	공영주차장 조성(A=604㎡, 20면)	본예산 요구액 (천원)	250,000
부기명 (세부사업)	운양2 공영주차장 조성	사업위치	김포시 운양동 1338-5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교통정책과	주차시설팀장 이강제	담당자	시설8급 김인혁	전화	2330
-----	-------	------------	-----	----------	----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대중교통과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임차운영 사업(매칭펀드)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김포시 시내버스 와이파이 450대		
사업목적	관내 시내버스 이용 시민들의 정보통신 서비스 이용 편의 증진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4조(인터넷 이용의 확산) 정부는 인터넷 이용이 확산될 수 있도록 공공 및 민간의 인터넷 이용시설의 효율적 활용을 유도하고 인터넷 관련 교육 및 홍보 등의 인터넷 이용기반을 확충하며, 지역별·성별·연령별 인터넷 이용 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추진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101,883	102,393	101,884	0	0	509	51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01,883	102,393	101,884			509	51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509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임차운영 사업 (매칭펀드)	201-02 공공운영비	· 시내버스 와이파이 통신 요금 : (경정) 18,961원 * 450대 * 12개월 - (기정) 18,867원 * 450대 * 12개월	= 509	

□ 예산요구 사유

- 공공와이파이 확대 정책을 기조로 2018년 하반기부터 추진한 경기도 정책 사업임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5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주관 KT 공공와이파이 갱신계약에 의해 해당 평균 이용 요금 증가(18,867원 → 18,961원) 변경내시 적용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4.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2025. 12.: 시내버스 와이파이 통신요금 납부(450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450대) 운영
2024	·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450대) 운영
2025	·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450대) 운영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27,009	114,899	-	12,110	
2024	101,883	101,883	-	0	
2025	101,884	59,622	-	42,262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마을버스티م장 유종오	담당자	행정6급 이선미	전화	5917
-----	-------	-------------	-----	----------	----	------

The 경기패스(자치단체간부담금)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김포시 이용자수 3,281명(월 60회 초과 이용자 및 1일 2회 초과 이용자)		
사업목적	대중교통 실사용액에 대한 환급 지원으로 대중교통 활성화 유도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해당조례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제15조 제1항
		제15조(대중교통 이용 지원) ① 도지사는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기도민에게 대중교통 이용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132,196	400,480	217,858	0	0	182,622	268,284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32,196	400,480	217,858			182,622	268,284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82,622	
The 경기패스 (자치단체간 부담금)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	· (경정) 15,504,160천원 (경기도 총사업비) * 70% ¹⁾ * 3.69% ²⁾ - (기정) 8,434,160천원 (경기도 총사업비) * 70% ¹⁾ * 3.69% ²⁾ =	182,622	

1) 총사업비 대비 전체 시군 부담비율

2) 김포시 부담비율

□ 예산요구 사유

○ 2025년 The경기패스 사업 참여에 따른 우리시 부담액 예산 반영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The경기패스 이용자 중 1일 2회 초과 대중교통 이용분 추가 지원에 따른 예산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4.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7. : 2025년 The 경기패스 사업 자치단체부담금 1차 납부(김포시→ 경기도)
 - 2025. 9 ~ 12. : 2025년 The 경기패스 사업 자치단체부담금 2차 납부(김포시→ 경기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 없음
2024	- 2024년 자치단체부담금 납부 : 132,196천원
2025	- 2025년 자치단체부담금 납부 : 108,929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132,196	132,196	-	-	
2025	217,858	108,929	-	108,929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장 이강은	담당자	행정8급 오희찬	전화	5913
-----	-------	------------	-----	----------	----	------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11,482명(관내 만6세 이상 ~ 만18세 이하 대중교통 이용 어린이·청소년)		
사업목적	어린이·청소년이 실제 사용한 대중교통비를 지원하여 교통비 부담 완화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해당조례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제15조 제1항
		제15조(대중교통 이용 지원) ① 도지사는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기도민에게 대중교통 이용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735,586	490,424	435,205	0	0	55,219	-245,162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735,586	490,424	435,205			55,219	-245,162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55,219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	· (경정) 48,000,000천원 (경기도 총사업비) * 30% ¹⁾ * 3.407% ²⁾ - (기정) 42,000,000천원 (경기도 총사업비) * 30% ¹⁾ * 3.454% ²⁾	= 55,219	

1) 총사업비 대비 전체 시군 부담비율

2) 김포시 부담비율

□ 예산요구 사유

- 2025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참여에 따른 우리시 부담액 예산반영 필요
- 만6세~18세 이하 대중교통 이용하는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실사용액에 대해 최대 24만원/연 한도로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경기도 총사업비 증가에 따른 우리시 부담액 증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7. : 2025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자치단체부담금 1차 납부(김포시→ 경기도)
 - 2025. 9 ~ 12. : 2025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자치단체부담금 2차 납부(김포시→ 경기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3년 자치단체부담금 납부 : 637,038천원
2024	- 2024년 자치단체부담금 납부 : 735,586천원
2025	- 2025년 자치단체부담금 납부 : 429,098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637,038	637,038	-	-	
2024	735,586	735,586	-	-	
2025	435,205	429,098	-	6,107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장 이강은	담당자	행정8급 오희찬	전화	5913
-----	-------	------------	-----	----------	----	------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2024년 추가부담액)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18,960명(관내 만6세 이상 ~ 만18세 이하 대중교통 이용 어린이·청소년)		
사업목적	어린이·청소년이 실제 사용한 대중교통비를 지원하여 교통비 부담 완화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해당조례	경기도 대중교통 이용편의 증진 기본 조례	제15조 제1항
		제15조(대중교통 이용 지원) ① 도지사는 경기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경기도민에게 대중교통 이용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0	10,478	0	0	0	10,478	10,478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0	10,478	0			10,478	10,478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0,478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자치단체간 부담금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	· 2024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예산 부족분 10,478천원 (2024년 경기도 정산 결과 반영)	= 10,478	

□ 예산요구 사유

- 2024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참여에 따른 우리시 부담액 예산반영 필요
- 만6세~18세 이하 대중교통 이용하는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실사용액에 대해 최대 24만원/연 한도로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2024년 경기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 정산 결과에 따라 김포시 추가 부담액 발생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9. ~ 12. : 2025년 어린이청소년 교통비 지원 자치단체부담금 납부(김포시→ 경기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해당없음
2025	-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장 이강은	담당자	행정8급 오희찬	전화	5913
-----	-------	------------	-----	----------	----	------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2층 전기저상버스 1대		
사업목적	광역버스노선에 2층 전기버스를 도입하여 친환경 대중교통 확충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1항제6호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해당조례	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
		제9조(저상버스 지원)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저상버스 구입에 따른 재정지원은 차량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며, 국비와 도비 그리고 시비 부담비율에 따라 지원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3,940,000	305,008	0	0	0	305,008	-3,634,992	
국비	2,400,000	180,000				180,000	-2,220,000	
도비	390,000	62,504				62,504	-327,496	
시비	1,150,000	62,504				62,504	-1,087,496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05,008	
2층 전기버스 보급 지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 305,008천원 * 1대(2층 전기버스)	= 305,008	

□ **예산요구 사유**

- 현재 운행중인 2층 경유버스를 친환경 2층 전기저상버스로 교체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대중교통 환경 제공

□ **예산증감 사유**

- 내구연한이 도래한 2층 경유버스 교체를 위한 2층 전기저상버스 1대분에 대한 구입비 지원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4.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3. : 2층 전기·저상버스 4대 투입
 - 2024. 6. : 2층 전기·저상버스 2대 투입
 - 2024. 9. : 2층 전기·저상버스 4대 투입
 - 2025. 11. : 2층 전기·저상버스 1대 출고 예정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실적없음
2024	· 2층 전기저상버스 10대 보급 지원
2025	· 실적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3,940,000	3,940,000	-	-	
2025	-	-	-	-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장 이강은	담당자	행정8급 김시후	전화	2456
-----	-------	------------	-----	----------	----	------

2층 저상버스 보급 지원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2층 전기저상버스 1대		
사업목적	광역버스노선에 2층 전기버스를 도입하여 친환경 대중교통 확충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제1항제6호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해당조례	김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9조
		제9조(저상버스 지원) 노선버스운송사업자의 저상버스 구입에 따른 재정지원은 차량 구입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것으로 하며, 국비와 도비 그리고 시비 부담비율에 따라 지원한다.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920,000	90,000	0	0	0	90,000	-830,000	
국비	460,000	45,000				45,000	-415,000	
도비	230,000	22,500				22,500	-207,500	
시비	230,000	22,500				22,500	-207,500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90,000	
2층 저상버스 보급 지원	402-02 민간자본사업보조 (이전재원)	· 90,000천원 * 1대 (2층 저상버스)	= 90,000	

예산요구 사유

- 현재 운행중인 2층 경유버스를 친환경 2층 전기저상버스로 교체하여 시민에게 쾌적한 대중교통 환경 제공

예산증감 사유

- 내구연한이 도래한 2층 경유버스 교체를 위한 2층 전기저상버스 1대분에 대한 구입비 지원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4.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3. : 2층 전기·저상버스 4대 투입
 - 2024. 6. : 2층 전기·저상버스 2대 투입
 - 2024. 9. : 2층 전기·저상버스 4대 투입
 - 2025. 11. : 2층 전기·저상버스 1대 출고 예정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실적없음
2024	· 2층 전기저상버스 10대 보급 지원
2025	· 실적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920,000	920,000	-	-	
2025	-	-	-	-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장 이강은	담당자	행정8급 김시후	전화	2456
-----	-------	------------	-----	----------	----	------

벽지오지 등 비수익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금 지원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공모여부	■사전수요 □사전지정 □공모	
보조사업자	선진상운(주)		대표자	신재호	
사업목적	비수익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금 재정지원을 통해 교통취약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통합관리망	□보탐e □사회복지시스템 □보육통합시스템 □기타 ■해당없음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3항	
		제50조(재정 지원) ③ 시·군 또는 구는 제1항제2호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2조 제1호	
		제2조(재정지원) 김포시장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1,556,305	1,667,880	2,446,224	0	0	-778,344	111,575	
시비	1,556,305	1,667,880	2,446,224			-778,344	111,575	
자부담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778,344	-778,344	0	
벽지오지 등 비수익노선 운행버스 손실보상금 지원	307-09 운수업계보조금	· (경정) 70C, D번 1,667,880천원 (226천원 * 28회 * 123일) · (기정) 70C, D번 2,446,224천원 (226천원 * 28회 * 246일)	-778,344	-778,344		

□ 예산요구 사유

- 비수익 노선으로 업체 손실에도 주민들을 위해 필요한 노선에 운행손실을 지원하여 노선 유지
- 골드라인 혼잡률 분산 대책으로 주요역사(고촌역) 인근 아파트출발 출근 급행버스 운행을 위해 전세버스의 임차에 따른 손실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대중교통 수단 공급

□ 예산증감 사유

- '25.7.1일자로 70C번, 70D번 노선이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준공영제) 시행에 따른 도비 지원사업으로 전환되어 6개월분 지방보조금 감액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보조사업자 : 관내 버스업체 2개소(선진버스, 선진상운) ○ 추진실적 : 운수업체 손실보전 1,357,412천원 지급
2024	○ 보조사업자 : 관내 버스업체 2개소(선진버스, 선진상운) ○ 추진실적 : 운수업체 손실보전 1,478,350천원 지급
2025	○ 보조사업자 : 관내 버스업체 1개소(선진상운) ○ 추진실적 : 운수업체 손실보전 상반기 가지급 1,005,320천원 지급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2023	1,492,992	1,492,992	-	1,164,124	1,164,124	-	328,868	328,868	-	
2024	1,556,305	1,556,305	-	1,478,350	1,478,350	-	77,955	77,955	-	
2025	2,446,224	2,446,224	-	1,005,320	1,005,320	-	1,440,903	1,440,903	-	8.22.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장 이강은	담당자	행정8급 김시후	전화	2456
-----	-------	------------	-----	----------	----	------

마을버스 손실재정지원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공모여부	■사전수요 □사전지정 □공모	
보조사업자	고촌교통(유) 등 11개 업체		대표자		
사업목적	남부권 및 북부권 마을버스 운송업체의 손실 재정 지원을 통한 지역주민의 이동권 보장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통합관리망	□보탐e □사회복지시스템 □보육통합시스템 □기타 ■해당없음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제50조 제2항 제1호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② 시·도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			
	해당조례	김포시 여객 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2조 제1항	
		제2조(재정지원)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2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5,234,395	6,474,640	5,600,000	0	0	874,640	1,240,245	
시비	5,234,395	6,474,640	5,600,000			874,640	1,240,245	
자부담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계	보조금	자부담	
			874,640	874,640	0	
마을버스 손실재정지원	307-09 운수업계보조금	· 일반마을버스 : (경정) 4,255천원(평균손실지원금) * 81대 * 12개월 =	384,640	384,640	0	
		- (기정) 3,860천원(평균손실지원금) * 81대 * 12개월				
		· 공공마을버스 : (경정) 8,471천원(평균손실지원금) * 23대 * 12개월 =	490,000	490,000	0	
		- (기정) 6,695천원(평균손실지원금) * 23대 * 12개월				

□ 예산요구 사유

- 시내버스가 경유할 수 없는 김포시 관내 세부 구간을 운행하는 마을버스 중 운영 손실이 발생하는 노선의 손실금을 재정 지원하여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 예산증감 사유

- 2024년도 기준 표준운송원가로 편성한 본예산으로는 2025년 확정 운송원가 반영 시 차액 정산 불가
- 가지급분 정산 및 상승된 운송원가 반영 위해 예산 증액 필요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보조사업자 : 마을버스 11개 업체, 36개 노선 · 손실재정지원 : 4,187,425천원 (일반마을버스 : 2,577,322천원, 공공마을버스 : 1,610,103천원)
2024	· 보조사업자 : 마을버스 11개 업체, 36개 노선 · 손실재정지원 : 5,258,019천원 (일반마을버스 : 3,402,262천원, 공공마을버스 : 1,855,757천원)
2025	· 보조사업자 : 마을버스 11개 업체, 36개 노선 · 손실재정지원 : 3,500,968천원 (일반마을버스 : 2,160,842천원, 공공마을버스 : 1,340,126천원)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2023	4,468,032	4,468,032	-	4,187,425	4,187,425	-	280,607	280,607	-	
2024	5,258,020	5,258,020	-	5,258,019	5,258,019	-	1	1	-	
2025	5,600,000	5,600,000	-	3,500,968	3,500,968	-	2,099,032	2,099,032	-	8.22.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마을버스티eam장 유종오	담당자	행정6급 이선미 행정7급 변영이	전화	5917 2455
-----	-------	---------------	-----	----------------------	----	--------------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대광위 광역버스 11개 노선		
사업목적	광역버스의 안정적인 운행 지원 및 서비스 개선을 위한 운영비 지원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3항
		제50조(재정 지원) ③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제2호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2조 1항
		제2조(재정지원)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4,546,813	5,922,411	7,153,000	0	0	-1,230,589	1,375,598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4,546,813	5,922,411	7,153,000			-1,230,589	1,375,598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230,589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	· (경정) 5,922,411천원 - (기정) 7,153,000천원	= -1,230,589	

□ 예산요구 사유

- 광역버스의 안정적 운행 지원, 서비스 개선을 위한 대광위 준공영제 운영비 지원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대광위에서 '25년 1분기 집행실적을 기준으로 재산출한 2025년 사업비가 감소하여 우리시 부담금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4.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자치단체간부담금 1차 지급(시→도)
 - 2025. 4. : 자치단체간부담금 2차 지급(시→도)
 - 2025. 6. : 시군부담지시서 감액내시 시달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경기교통공사 위탁사업비 지급 : 3,155,851천원
2024	· 경기교통공사 위탁사업비 지급 : 4,546,813천원
2025	· 자치단체간부담금 지급 (시→도) : 5,922,411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458,351	3,155,851	302,500	-	
2024	4,546,813	4,546,813	-	-	
2025	7,153,000	5,922,411	-	1,230,589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장 이강은	담당자	행정9급 홍서정	전화	5916
-----	-------	------------	-----	----------	----	------

광역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경기도 공공버스 7개 노선		
사업목적	경기도 공공버스(준공영제) 운영하여 운수종사자 근무개선 및 운행손실 지원을 통한 안정적 운행으로 대중교통 서비스 질 제고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3항
		제50조(재정 지원) ③ 시·군 또는 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는 제1항제2호의 수익성이 없는 노선을 운행하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군 또는 구의 조례로 정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2조 1항
		제2조(재정지원)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9,773,597	7,618,386	3,826,097	0	0	3,792,289	-2,155,211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9,773,597	7,618,386	3,826,097			3,792,289	-2,155,211	
기타		0					0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792,289	
광역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308-07 자치단체간부담금	· (경정) 7,618,386천원 - (기정) 3,826,097천원	= 3,792,289	

- 예산요구 사유
- 광역버스의 안정적 운영지원, 서비스 개선을 위한 경기도 공공버스 운영비 지원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본예산 부족분에 대한 경기도 예산 추가 편성으로 우리 시 부담금 증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4.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자치단체간부담금 1차 지급(시→도)
 - 2025. 5. : 시군부담지시서 증액내시 시달
 - 2025. 6. : 자치단체간부담금 2차 지급(시→도)
 - 2025. 10. : 자치단체간부담금 3차 지급(시→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2023	· 경기교통공사 위탁사업비 지급 : 4,973,280,000원
2024	· 경기교통공사 위탁사업비 지급 : 11,662,833,000원 ※ 이월액 1,889,236천원
2025	· 자치단체간부담금 지급 (시→도) : 3,826,097,000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6,862,516	4,973,280	1,889,236	-	
2024	11,662,833	11,662,833	-	-	
2025	3,826,097	3,826,097	-	-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장 이강은	담당자	행정9급 홍서정	전화	5916
-----	-------	------------	-----	----------	----	------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지원

사업기간	2025. 1.~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시내버스 67대(8개 노선)		
사업목적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준공영제)의 안정적인 운영 지원을 위한 사업비 및 위탁수수료 지급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2호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2. 수익성이 없는 노선의 운행	
	해당조례	경기도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
		제19조(재정지원) ① 운송사업자는 수입금이 표준운송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수입금 현황, 실제 지출액, 표준운송원가를 근거로 도지사에게 재정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신청 내용을 확인·검토하여 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지원금을 지원한다. ③ 도지사는 표준운송원가에 해당하지 않으나 시내버스 운송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재정지원할 경우 지원금의 집행 등에 관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3,886,397	5,412,535	4,267,782	0	0	1,144,753	1,526,138	
국비		0					0	
도비	1,165,919	1,623,761	1,280,335			343,426	457,842	
시비	2,720,478	3,788,774	2,987,447			801,327	1,068,296	
기타		0					0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144,753	
시내버스 공공관리제 운영 지원	308-13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 위탁사업비	· (경정) 5,412,535천원 - (기정) 4,267,782천원	= 1,144,753	

예산요구 사유

○ 시내버스 공공관리제(시주관) 시행에 따른 시내버스 노선의 운행손실금 재정지원 예산 필요

예산증감 사유

○ 시내버스 3개 노선, 29대 공공관리제 추가 시행에 따른 예산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4.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7. : 공공관리제 시행(60-3번 12대, 2번 8대)
 - 2024. 10. : '25년 사업비 가내시 시달
 - 2025. 1. : 90-1번(8대), 70번(5대), 82번(5대) 공공관리제 시행
 - 2025. 5. : '25년 하반기 추가 사업량 수요제출
 - 2025. 6. : '25년 하반기 증액내시서 시달
 - 2025. 7. : 70C, 70D 등 2개 노선 공공관리제 시행(16대)
 - 2025. 10. : 88번 공공관리제 시행(13대)
 - 2025. 11. : 위탁사업비 지급(경기교통공사)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해당없음
2024	· 경기교통공사 위탁사업비 지급 : 3,886,397천원
2025	· 경기교통공사 위탁사업비 지급 : 2,271,696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해당없음			-	
2024	3,886,397	3,886,397	-	-	
2025	4,267,782	2,271,696	-	1,996,086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장 이강은	담당자	행정9급 홍서정	전화	5916
-----	-------	------------	-----	----------	----	------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136명		
사업목적	김포시 관내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근로의욕 고취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2항 제8호
		제50조(재정 지원) ② 시·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으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 또는 융자의 대상 및 방법과 보조금 또는 융자금의 상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8. 운수종사자의 근로여건 및 처우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당조례	김포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2조 제1항
		제2조(재정지원) 김포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이하 “운수사업자”라 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제5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0	326,453	0	0	0	326,453	326,453	
국비		0					0	
도비		97,936				97,936	97,936	
시비		228,517				228,517	228,517	
기타		0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26,453	
마을버스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	307-09 운수업계보조금	· 200,000원 * 136명 * 12개월 =	326,453	

□ 예산요구 사유

- 열악한 근로환경에 종사하고있는 마을버스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 및 서비스 의식 제고를 위한 처우개선비 지급

□ 예산증감 사유

- 경기도 확정내시에 따른 예산 편성(136명, 월 200,000원)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4.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5. : 도비 보조금 확정내시
 - 2025. 9. ~ 12. : 사업집행 및 정산
 - 2026. 1. : 25년 집행분 점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5년 신규사업, 해당없음
2024	- 2025년 신규사업, 해당없음
2025	- 2025년 신규사업, 해당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마을버스팀장 유종오	담당자	행정6급 이선미	전화	5917
-----	-------	------------	-----	----------	----	------

시내버스 시설개선 지원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사업규모	CCTV 2대, 공기청정필터 90대		
사업목적	시내버스 시설개선을 통해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6항
		제50조(재정 지원) ① 국가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수행하는 경우에 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에게 필요한 자금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6.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의 서비스 향상을 위한 시설·장비의 확충 또는 개선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0	21,200	0	0	0	21,200	21,200	
국비		0					0	
도비		6,360				6,360	6,360	
시비		14,840				14,840	14,840	
기타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1,200	
시내버스 시설개선 지원	307-09 운수업계보조금	· CCTV 880천원 * 2대 · 공기청정 필터 216천원 * 90대	= 1,760 = 19,440	

- 예산요구 사유
- 노후화된 시내버스의 쾌적한 환경 및 안정적인 대중교통 서비스 제공
- 예산증감 사유
- 기존 도 재배정 사업이었으나 금년부터 경기도 개별사업으로 분리되어 우리 시도 예산 별도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미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3. : '25년 사업량 수요 제출
 - 2025. 4. : '25년 추진계획 및 내시서 시달
 - 2025. 12. : 설치 완료 및 검수
 - 2026. 1. : 사업정산 보고(시->도)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공기청정필터 교체지원(39,096천원), 행선지LED(27,280천원) CCTV 교체(27,280천원)
2024	· 공기청정필터 교체지원(71,496천원), 행선지LED(2,668천원), 단말기위치표준화(3,465천원), 어라운드뷰(328,800천원)
2025	· 실적없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15,734	115,734	-	-	도 재배정
2024	406,426	406,426	-	-	도 재배정
2025	-	-	-	-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장 이강은	담당자	행정9급 홍서정	전화	5916
-----	-------	------------	-----	----------	----	------

대중교통 소외지역 이음택시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26개 마을
사업규모	통진읍 도사1리 등 대중교통 소외지역 26개 마을		
사업목적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주민들의 이동권 확보와 교통복지 증진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29조 제1항 제5호 및 제35조의2
		제29조(농어촌의 기초생활여건 개선)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하고, 경제활동 기반을 구축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지원하여야 한다. 5. 농어촌의 대중교통체계의 확충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이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과 지역의 특성을 반영하여 추진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제35조의2(농어촌지역 교통편의 증진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도서 지역의 교통편의를 증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도서민, 도서민 차량 등에 대하여 「해운법」 제3조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내항 여객 운송사업의 운임 및 요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없거나 대중교통에 취약한 농어촌에 거주하는 고령 농어업인 등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하여 해당 지역에 적합한 교통서비스를 지원할 수 있다.	
		김포시 이음택시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40,000	50,000	40,000	0	0	10,000	10,000	
국비	20,000	25,000	20,000			5,000	5,000	
도비		0					0	
시비	20,000	25,000	20,000			5,000	5,000	
기타		0					0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0,000	
대중교통 소외지역 이음택시	307-02 민간경상사업보조	· (경정) 11,000원 (마을별 구간 평균요금) * 4,545회 - (기정) 10,000원 (마을별 구간 평균요금) * 4,000회 =	10,000	

□ 예산요구 사유

○ 대중교통 소외지역의 거주 시민들의 교통편의증진 및 이동권보장을 위한 이음택시 운영 지원

□ 예산증감 사유

○ 전년 대비 이음택시 이용횟수 증가(국비 변경 내시)에 따라 사업비 증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결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반영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2024.11 반영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10. : 국비 보조금 가내시
 - 2025. 6. : 국비 보조금 변경내시
 - 2025. 1. ~ 2025. 12. : 사업집행 및 분기별 운행내역 보고
 - 2026. 2. : 보조사업 정산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6개 마을 1,848회 이용 지원
2024	· 26개 마을 3,580회 이용 지원
2025	· 26개 마을 2,487회 이용 지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0,000	27,331	-	12,669	
2024	40,000	39,211	-	789	
2025	40,000	27,734	-	12,266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택시화물팀장 한규리	담당자	행정6급 윤은희	전화	5552
-----	-------	------------	-----	----------	----	------

운수업계 유류액 인상분 보전을 위한 지원

사업기간	2025. 1. 1. ~ 2025. 12. 31.		공모여부	☐ 사전수요 ☒ 사전지정 ☐ 공모
보조사업자	화물운송사업자 및 여객운송사업자		대표자	화물운송사업자 및 여객운송사업자 대표
사업목적	유류인상분에 대한 보전을 위하여 운수업계에 유류 보조금을 지급하여 운영의 안정화			
사업구분	☐ 신규 ☒ 연(연)반복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통합관리망	☐ 보탬e ☐ 사회복지시스템 ☐ 보육통합시스템 ☒ 기타(유가보조금관리시스템) ☐ 해당없음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3조 제2항
		제43조(재정지원) ②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4조, 제44조의2 및 제60조의2에서 같다)는 운송사업자, 운송가맹사업자 및 제40조제1항에 따라 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을 위탁받은 자(이하 이 조, 제44조 및 제44조의2에서 “운송사업자등”이라 한다)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의 세액 등의 인상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조할 수 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50조 제5항
		제50조(재정 지원) ⑤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운송사업자에게 유류(油類)에 부과되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세금 등의 인상액에 상당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이 경우 보조금의 지급기준·지급방법 및 지급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9,000,000	11,800,000	10,000,000	0	0	1,800,000	2,800,000	
시비	9,000,000	11,800,000	10,000,000			1,800,000	2,800,000	
자부담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1,800,000	1,800,000	0	
운수업계 유류액 인상분 보전을 위한 지원	307-09 운수업계보조금	· 화물(경유) : (경정) 9,336,147천원 - (기정) 8,490,944천원 = 845,203 · 택시(LPG) : (경정) 874,223천원 - (기정) 507,455천원 = 366,768 · 버스(경유) : (경정) 573,028천원 - (기정) 361,056천원 = 211,972 · 버스(CNG) : (경정) 1,016,602천원 - (기정) 640,545천원 = 376,057	845,203 366,768 211,972 376,057	845,203 366,768 211,972 376,057		

□ 예산요구 사유

- 물류 및 여객의 안정적인 수송 및 운영의 안정화 도모를 위하여 유류액 인상분에 대한 보전 필요 ('01년부터 시행)

□ 예산증감 사유

- '25. 5. 기준 유가보조금 지급단가 인상으로 연말 기준 재원부족에 따라 증액 불가피

※ [참고] 2025년 상반기 유가보조금 안분액 누적현황: 7,350,865,070원

구분	차 종	'24. 11. 1. ~ (유류세율 23% 인하)	'25. 5. 1. ~ (유류세율 15% 인하)
경유	화물차, 택시, 고속버스(우등)	224.28원/ℓ	266.58원/ℓ
	노선버스, 고속버스(일반)	246.70원/ℓ	293.23원/ℓ
LPG	화물차, 택시, 버스	155.60원/ℓ	170.40원/ℓ
CNG	버스	65.3m³	65.3m³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보조사업자 : 영업용 화물자동차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 추진실적 : 8,048,461천원 지급
2024	○ 보조사업자 : 영업용 화물자동차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 추진실적 : 8,258,874천원 지급
2025	○ 보조사업자 : 영업용 화물자동차 및 여객자동차 운수사업자 ○ 추진실적 : 7,145,213천원 지급

○ 최근3년 집행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예산액			집행액			집행잔액			비고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계	시비	자부담	
2023	8,700,000	8,700,000	-	8,048,461	8,048,461	-	651,539	651,539	-	
2024	9,000,000	9,000,000	-	8,258,874	8,258,874	-	741,126	741,126	-	
2025	10,000,000	10,000,000	-	7,145,213	7,145,213	-	2,854,787	2,854,787	-	8.22. 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대중교통과	버스정책팀장 이강은 택시화물팀장 한규리	담당자	행정8급 김시후 행정6급 윤은희 행정8급 이호중	전화	2456 5552 5918
-----	-------	--------------------------	-----	----------------------------------	----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건설도로과



시도12호선(전류~원산간) 도로 확포장사업

사업기간		2017. 11. ~ 2027. 12.	사업위치	하성면 전류리 ~ 원산리 일원	
사업규모		L=3.1km, B=20m(4차로), 총사업비 : 49,475백만원			
사업목적		김포파주간 고속도로 구간과 연결되는 시도12호선의 확장을 통한 IC 건설 여건 마련으로 교통량 분산 및 접경지역의 균형발전 도모			
사업구분		☐ 신규 <input "="" type="checkbox"/>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로법		제25조 및 제82조	
		제25조 제1항(도로구역의 결정)			
		도로관리청은 도로 노선의 지정·변경 또는 폐지의 고시가 있으면 지체 없이 해당 도로의 도로구역을 결정·변경 또는 폐지하여야 한다.			
		제82조 제1항(토지 등의 수용 및 사용)			
도로관리청은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면 도로구역에 있는 토지·건축물 또는 그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소유권이나 그 토지·건축물 또는 물건에 관한 소유권 외의 권리를 수용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11,065,000	3,000,000	1,000,000	0	0	2,000,000	-8,065,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1,065,000	3,000,000	1,000,000			2,000,000	-8,065,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000,000	
시도12호선 (전류~원산간) 도로확포장 사업	401-01 시설비	. 경정(2,500,000천원)-기정(1,000,000천원) . 공사비 : L=3.1km, B=20m(4차로) ※ 계속사업으로 공사 발주비용 203억원 중 15억원 요구	= 1,500,000	
	401-02 감리비	. 경정(500,000천원)-기정(0원) . 건설사업관리 : L=3.1km, B=20m(4차로) ※ 계속사업으로 용역 발주비용 20억원 중 5억원 요구	= 500,000	

□ 예산요구 사유

- 2027년 제2순환 고속국도 하성IC 연계를 위하여 신속한 사업 필요
- 2025년 하반기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를 위한 사업비 편성
- 2025년 12월 공사 착공을 위한 관급자재비 예산 확보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하반기 공사 및 건설사업관리용역 발주를 위한 사업비 확보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적정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2017.11.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17. 11. :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 2018. 6. :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22. 2. : 도로구역 결정 및 손실보상계획 공고
- 2022. 4. : 토지 분할 및 보상 착수
- 2022. 12. : 도로구역(변경) 결정 고시
- 2023. 3. : 협의보상 개시
- 2023. 6. : 도로구역(변경) 결정 고시
- 2025. 12. : 공사착공
- 2027. 12. : 공사준공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G)	기투자 (A)	2025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G)	비고
				계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3회추경 (F)	
계		49,475,000	23,235,000	6,000,000	1,000,000	0	0	2,000,000	23,260,000
공 정 별	설계비	800,000	800,000	0					
	보상비	24,155,000	20,155,000	4,000,000	1,000,000				
	공사비	23,500,000	1,760,000	1,500,000				1,500,000	23,240,000
	감리비	1,000,000	500,000	500,000				500,000	
	부대비	20,000	20,000	0					20,00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보상 (보상률 40%)
2024	- 도로구역 결정(변경) 및 보상 (보상률 80%)
2025	- 편입토지 및 지장물 2차 보상 검토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1,329,130	9,111,870	2,217,260		
2024	13,282,260	8,677,843,	4,604,417		
2025	5,604,417	108,554	-	5,495,863	8.22..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건설도로과	사업규모	L=3.1km, B=20m(4차로)	3회추경 요구액 (천원)	2,000,000
부기명 (세부사업)	시도12호선(전류~원산간) 도로 확포장사업	사업위치	하성면 전류리 ~ 원산리 일원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설도로과	도로건설2팀장 이무영	담당자	시설7급 조효훈	전화	2138
-----	-------	-------------	-----	----------	----	------

하성 농어촌도로 리도207호선 개설사업

사업기간		2025. 7. ~ 2030. 12.		사업위치	하성면 가금리 ~ 양택리 일원	
사업규모		도로신설 L=2.2km, B=12m(2차로)				
사업목적		도로망 확충을 통한 지역 간 균형발전 도모, 시민 교통편의 제공 및 관광 활성화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8조	
		제8조(도로사업계획의 수립)				
		① 군수는 정비계획에 따라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된 다음 해의 도로사업계획(이하 “사업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10월 31일까지 수립하여야 한다. 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수립한 사업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를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0	650,000	0	0	0	650,000	65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650,000				650,000	650,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650,000	
하성 농어촌도로 리도 207호선 개설사업	401-01 시설비	· 농어촌도로 실시설계 용역 (4,349,000원 × 2,200m × 4.15%) × 1.45 × 1.1(부가세) ※ 2022년 한국토지주택공사 단지개발사업 조성비 및 기반시설 설치비 ※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 엔지니어링 기준 건설부문 요율	= 650,000	

□ **예산요구 사유**

- 애기봉 평화생태공원의 방문객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현황 경유 도로인 국도48호선과 국지도56호선은 출퇴근 차량과 화물차의 통행으로 인하여 일반 차량의 원활한 통행이 불가능 함.
- 교통 서비스 개선을 위해 애기봉~태산패밀리파크 경관도로 개설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경관도로와 연계되는 신규 노선의 개설을 통해 도로의 연속성 및 효율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함.
- 이에 따라 신규 노선에 대한 실시설계 및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용역을 추진하고자 함.

□ **예산증감 사유**

- 도로 신설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비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적정	-	-	-	-	-	-	-	-
일자	2025.11 반영	2025.8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7. : 2025년 3회 추가경정예산 지방자치투자심사 의뢰
- 2025. 12. : 실시설계 용역 착수
- 2027. 6. : 실시설계 용역 준공 및 농어촌도로 노선지정 고시
- 2028. 1. : 토지보상 착수
- 2029. 1. : 공사 착공
- 2030. 12. : 공사 준공

○ 투자사업 공정별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총사업비 (A+B+G)	기투자 (A)	2025년 예상 소요액(B)				향후투자 (G)	비고
				계 (B=C+D+E+F)	본예산 (C)	1회추경 (D)	2회추경 (E)	3회추경 (F)	
계		22,000,000	0	650,000	0	0	0	650,000	21,350,000
공 정 별	설계비	650,000		650,000				650,000	
	보상비	7,000,000		0					7,000,000
	공사비	10,600,000		0					10,600,000
	감리비	1,100,000		0					1,100,000
	부대비	650,000		0					650,000
	예비비	2,000,000							2,000,000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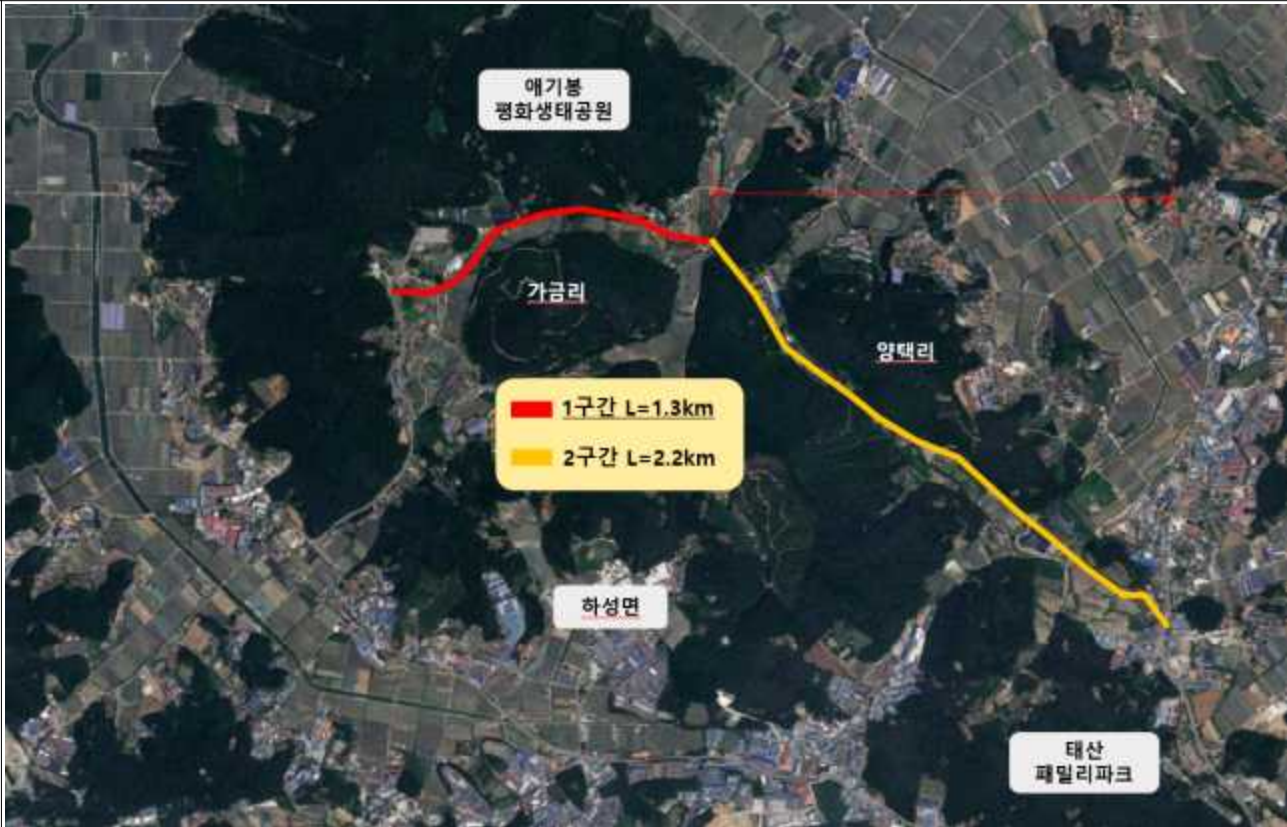
2023	-
2024	-
2025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8.22.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건설도로과	사업규모	L=2.2km, B=12m		3회추경 요구액 (천원)	650,000
부기명 (세부사업)	하성 농어촌도로 리도207호선 개설사업	사업위치	하성면 가금리 ~ 양택리 일원			
위치도						
현장사진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설도로과	도로건설1팀장 심재성	담당자	시설8급 임현호	전화	2438
-----	-------	-------------	-----	----------	----	------

양수장 및 저수지 유지관리

사업기간	2025. 1. ~ 2025.12.	사업위치	관내 저수지 및 양수장
사업규모	저수지 및 양수장 유지관리		
사업목적	농업생산기반시설 정비를 통한 안전한 유지관리 도모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18조
	제18조(농업생산기반시설의 관리) ①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에 대하여 항상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농업생산기반시설관리자는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정비, 시설물의 개수·보수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243,420	423,049	409,049	0	0	14,000	179,629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43,420	423,049	409,049			14,000	179,629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4,000	
양수장 및 저수지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경정) 74,000천원 - (기정) 60,000천원 · 농업기반시설 공공요금 : 12,333,300원*6월=74,000천원	= 14,000	

□ 예산요구 사유

- 2025년 장기간 가뭄으로 농업용수 공급을 위한 양수장 가동 증가에 따른 예산 확보
- 2025년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10%)에 따른 예산 확보

□ 예산증감 사유

- 2025년 지속적인 가뭄으로 인한 농업용수 공급 부족으로 양수장 가동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전기사용료가 증가함. 이에 따라, 전년 대비 전기사용료 인상에 따른 사용료를 하반기 예산에 확보하고자 함.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뢰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1. ~ 12. : 저수지, 양수장 및 관정 전기요금 납부 및 유지관리, 포내·약암양수장 보안관리
 - 2025. 3. ~ 10. : 저수지 설계용역 및 보수공사, 장비 교체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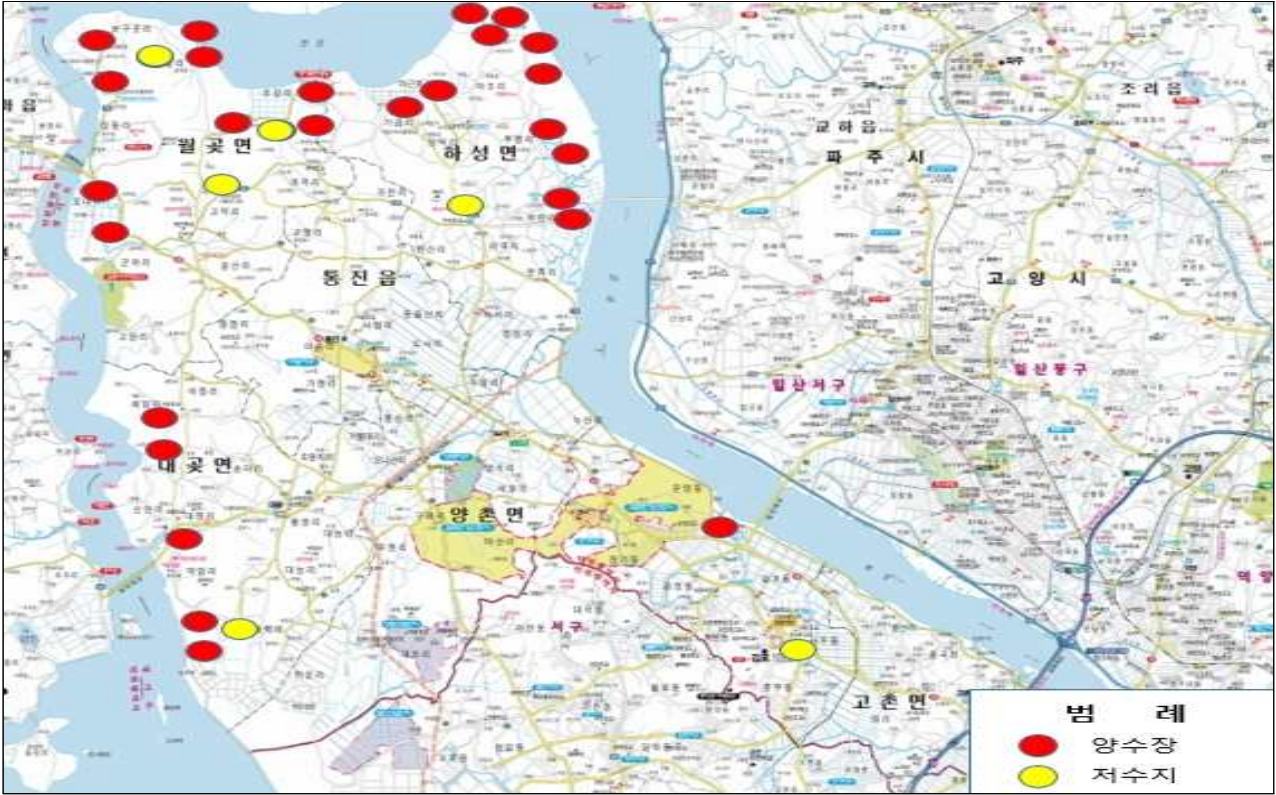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2023	- 송마양수장 유지보수(수중펌프, 전기공사), 포내양수장 유지보수(전기공사), 시암리 수문 교체공사, 걸포동 4-34번지 일원 농수로 준설공사, 공공운영비 집행
2024	- 양수장 유지보수(시암1, 약암, 조강, 용강, 하무, 대벽 등), 수문 및 전기공사(약암리, 포내리), 공공운영비 집행
2025	- 조강저수지 데크 정비공사, 보수공사(대벽저류지 웬스, 고막양수장 펌프 및 도장, 포내보 전도 수문, 포내양수장 케이블, 하무 양수장 펌프 배관, 약암양수장 진공펌프 및 콘덴서, 장기동 배수로 수문 제어장치 등), 공공운영비 집행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63,392	255,982	-	7,410	
2024	243,420	234,663	-	8,757	
2025	409,049 (공공운영비 60,000)	175,340 (공공운영비 60,000)	-	233,709 (공공운영비 0)	8.22..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건설도로과	사업규모	저수지 및 양수장 유지관리	3회추경 요구액 (천원)	14,000
부기명 (세부사업)	양수장 및 저수지 유지관리	사업위치	관내 저수지 및 양수장		
위치도					
현장사진	  양수장 저수지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설도로과	지역개발팀장 박종진	담당자	시설9급 이아름	전화	2459
-----	-------	------------	-----	----------	----	------

농업 및 마을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기간		2025. 1. ~ 2025. 12.		사업위치	관내 비법정도로
사업규모		소규모 마을 및 농업 기반시설(농로, 용·배수로 등) 유지관리 공사 및 손해배상금, 국가배상금 3건 지급			
사업목적		농업 기반시설(농로, 용·배수로 등)을 유지관리하며, 관련 소송 판결 및 국가배상 결정에 따른 배상금을 지급하고자 함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농어촌정비법」			제10조
		제10조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 시행자) 농업생산기반 정비사업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른 한국농어촌공사(이하 “한국농어촌공사”라 한다) 또는 토지 소유자가 시행한다.			
		「국가배상법」			제5조
		제5조 (공공시설 등의 하자로 인한 책임) ① 도로·하천, 그 밖의 공공의 영조물(營造物)의 설치나 관리에 하자(瑕疵)가 있기 때문에 타인에게 손해를 발생하게 하였을 때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1,335,000	1,736,555	1,532,625	0	0	203,930	401,555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335,000	1,736,555	1,532,625			203,930	401,555	
기타		0					0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03,930	
농업 및 마을 기반시설 유지관리	305-01 배상금등	(경정) 3,930천원 - (기정) 0천원 · 국가배상금 소송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2건) - 인천배심2022년 국배 138호 : 2,365,392원*1건 - 인천배심2022년 국배 111호 : 228,000원*1건 · 민사소송(구상금청구) 판결에 따른 손해배상금 지급 (1건) - 2024가소2206911 구상금 : 1,336,000원*1건	= 3,930	
	401-01 시설비	(경정) 700,000천원 - (기정) 500,000천원 · 마을기반시설 유지관리 연간단가 공사	= 200,000	

예산요구 사유

- 작년 대비 민원에 의한 비법정도로 보수공사(소파 보수, 하부 쇄굴) 물량 증가로 당초 편성된 유지 관리 연간 단가 공사비 소진에 따른 예산 증액 필요
- 민사소송 패소 관련 배상금 지급액 확보

□ 예산증감 사유

- 마을기반시설(비법정도로) 유지관리 연간단가 예산이 소진되어, 9월 이후 민원 처리를 위한 유지관리 공사 예산 확보 필요
 - '25.08.26. 기준 작년 대비 국민신문고 민원 건 (165건→308건) 약 140건 증가
- 작년 8월 실정 검토 보고[건설도로과-15204호(2024.08.20.)]와 비교하여 올해 7월 실정 검토 보고 [건설도로과-14133호(2025.08.06.)]의 도로 포장공(소파보수, 덧씌우기, 재포장 등) 시공 물량이 증가.
 - 포장공: 약 800㎡ 증가(2,971㎡→3,788㎡)
- 「국가배상법」 제 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배상결과에 따른 배상금 지급사유 발생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9. : 2025년 비법정도로 유지관리 연간단가 공사 준공
 - 2025. 10. : 2025년 비법정도로 유지관리 연간단가 공사(하반기) 착공
 - 2025. 12. : 배상금(국가배상금 및 손해배상금) 지급 (3건 예정)
 - 2025. 12. : 2025년 비법정도로 유지관리 연간단가 공사(하반기)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농업 및 마을 기반시설 유지관리 연간단가 공사 116건 - 용·배수로정비 및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5건 - 구거 수초목제거 및 준설작업 9건
2024	- 농업 및 마을 기반시설 유지관리 연간단가 공사 153건 - 용·배수로정비 및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7건 - 구거 수초목제거 및 준설작업 5건
2025	- 농업 및 마을 기반시설 유지관리 연간단가 공사 진행 중 - 마을안길 재포장공사 4건 진행 중 - 구거 수초목제거 및 용·배수로 정비 및 준설 작업 11건 진행 중 - '24년 과속방지 시설 심의위원회 가결 안건 과속방지턱 28개소 시공 완료 ('25년 1,2회 44개소 추가 시공 필요)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380,000	1,328,010	-	51,990	
2024	1,335,000	1,100,532	207,237	27,231	
2025	1,739,862	866,276	-	873,586	8.22.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필요 구간 예시)

부서	건설도로과	사업규모	농업 기반시설(농로, 용·배수로 등) 보수	3회추경 요구액 (천원)	203,930
부기명 (세부사업)	농업 및 마을 기반시설 유지관리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비법정도로 전역		
현장사진1 도시라558-1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건설도로과	지역개발팀장 박종진	담당자	시설7급 이시구 시설8급 오승연	전화	2431 2429
-----	-------	------------	-----	----------------------	----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도로관리과



도로 유지관리(도로유지관리 연간단가)

사업기간	2025. 1. ~ 12.	사업위치	관내 법정도로
사업규모	도로보수 연간단가(도로, 보도, 배수로, 도로이정표 등 도로시설물 유지보수)		
사업목적	도로유지관리 연간단가 공사를 통한 신속한 도로 보수 실시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도로법		제31조 제1항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①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2,240,000	3,100,000	2,500,000	0	0	600,000	86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240,000	3,100,000	2,500,000			600,000	860,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600,000	
도로 유지관리	401-01 시설비	· 법정도로 공종별 유지보수 연간단가(3개 구역)	= 600,000	

□ 예산요구 사유

- 관리 도로의 지속적인 이용 증가와 기상이변에 따른 도로 파손이 빈번하게 발생됨에 따라, 당초 편성된 연간단가 공사비 소진.
- 우기 및 동절기 대비 도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선제적 유지관리가 필요하며, 긴급보수 및 민원 대응 등 즉각적인 현장 조치를 위해 공사비 추가 확보 불가피.

□ 예산증감 사유

- 도로 파손 민원 급증 및 기후변화로 인한 유지관리 필요 구간 확대 등으로 연간단가 예산 부족 발생
- 하절기 폭우 및 동절기 결빙 등 계절별 특이 기상 대응을 위한 사전 보수구간이 증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 : 법정도로 유지보수 연간단가(3구역) 착공
 - 2025.01. ~ 2025.12. : 도로이정표 유지보수 연간단가 착공 및 준공
 - 2025.03. ~ 2025.11. : 법정도로 준설 연간단가 공사(3구역) 착공 및 준공
 - 2025.09. : 법정도로 유지보수 연간단가(3구역) 준공
 - 하반기 법정도로 유지보수 연간단가(3구역) 착공
 - 2025.12. : 하반기 법정도로 유지보수 연간단가(3구역)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2023	· 도로유지관리 연간단가(1~8구역) · 표지판 설치 55개소 및 가드레일 100경간 · 배수로 준설 등
2024	· 도로유지관리 연간단가(1~8구역) · 법정도로 준설공사(1~3구역) · 도로이정표 유지보수 연간단가
2025	· 도로유지관리 연간단가(1~3구역) · 도로유지관리 연간단가 폐기물 처리 용역(1~3구역) · 도로유지관리 연간단가 재해예방 기술지도 용역(1~3구역) · 법정도로 준설 연간단가 공사(1~3구역) · 법정도로 준설 연간단가 폐기물처리 용역(1~3구역) · 도로이정표 유지보수 연간단가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800,000	2,311,828	-	488,172	
2024	2,240,000	2,240,000	-	-	
2025	2,500,000	1,792,663	-	707,337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로관리과	도로보수팀장 장진혁	담당자	시설7급 박병선	전화	4574
				시설8급 이영수		4575
				시설9급 오은채		4576

도로 유지관리(법정도로 재포장공사)

사업기간	2025. 9. ~ 12.	사업위치	관내 법정도로
사업규모	도로 절삭 후 재포장 1,500a		
사업목적	노면상태가 불량한 관내 법정도로 구간에 재포장 공사를 실시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제공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로법	제31조 제1항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①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2,500,000	3,000,000	1,500,000	0	0	1,500,000	50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500,000	3,000,000	1,500,000	0	0	1,500,000	500,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본예산 요구액	비고
		합 계	1,500,000	
도로유지관리	401-01 시설비	· 읍면시도 재포장공사 - 경정550a(면적)*2,000,000원/a(단가) - 가정250a(면적)*2,000,000원/a(단가) = 600,000 · 도시계획도로 재포장공사 - 경정950a(면적)*2,000,000원/a(단가) - 가정500a(면적)*2,000,000원/a(단가) = 900,000		

□ 예산요구 사유

- 우기철 이후 노후 도로상 다수의 포트홀 및 균열 등 노면 파손 급증으로 추가 재포장 필요
- 김포한강로, 김포대로(장기IC 램프), 시도23호선 등 주요 간선기능 도로
- 재포장 공사 지연시 차량 파손(영조물 배상 등) 및 안전사고 위험 민원 급증 예상

□ 예산증감 사유

- 예산 미확보로 재포장 미시행 구간 및 우기철 이후 재포장 시급 구간 발생에 따른 추가 예산 확보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의결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7. ~ 2025.08. : 현장조사 및 실시설계
 - 2025.09. ~ 2025.12. : 공사 착공 및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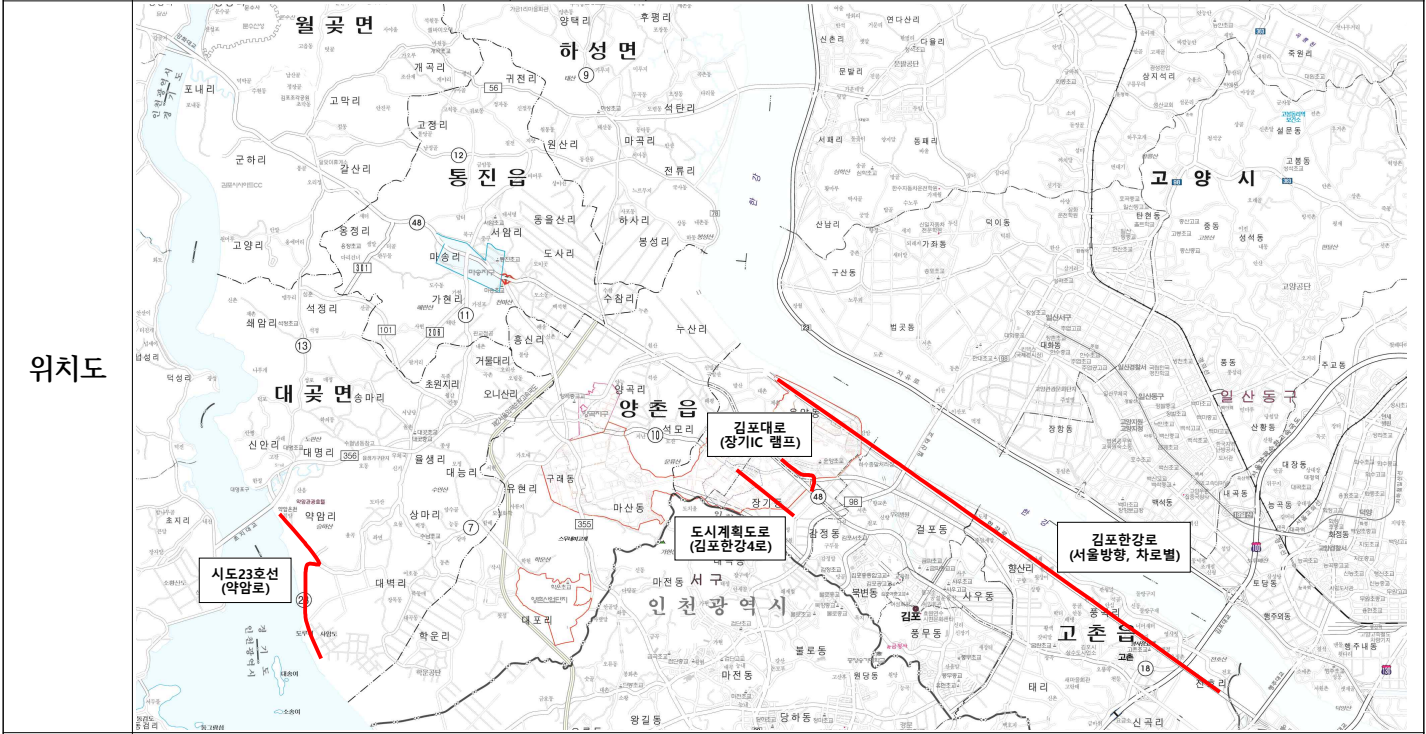
2023	- 읍면시도(시도7호선) 재포장공사 95a - 도시계획도로(걸포로, 김포한강로, 돌문로, 김포한강3로, 승가로, 김포대로2270번길) 재포장공사 672a - 국도 및 지방도(국도48호선) 재포장공사 71a
2024	- 주요 간선도로(김포한강로, 김포한강10로) 재포장공사 498.7a - 시도(시도7호선, 시도12호선) 및 도시계획도로(장차로, 김포한강1로, 김포한강4로) 재포장공사 912.5a
2025	- 읍면시도 (12호선,18호선, 101호선) 재포장공사 230.1a * 시도12호선(고정 사거리 ~ 고정 회전교차로), 인향로(수기마을 ~ 청구아파트), 대곶북로(간동사거리 ~ 송마팔거리) - 주요 도시계획도로(김포한강7로, 승가로, 김포대로) 재포장공사 278.8a * 김포한강7로(구래역 사거리 ~ 구래 삼거리), 승가로(풍무동 97-29 ~ 풍무동 662-187), 하나교 김포대로(한강로입구 사거리 ~ 검은다리 사거리)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3,000,000	2,750,526	-	249,474	
2024	2,500,000	2,500,000	-	-	
2025	1,500,000	1,135,245	-	364,755	8.22.기준 집행현황

□ 위치도 및 현장사진

부서	도로관리과	사업규모	A = 750a		3회추경 예산요구액 (천원)	1,500,000
부기명 (세부사업)	법정도로 재포장공사 (도로 유지관리)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법정도로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로관리과	도로보수팀장 장진혁	담당자	시설6급 모상훈	전화	4573
-----	-------	------------	-----	----------	----	------

침수 취약지역 진입차단설비 설치

사업기간	2025. 9. ~ 12.	사업위치	운양동 1240-11번지 일원 통로암거 고촌읍 태리 440-2번지 계양천 산책로
사업규모	차량 및 인명 진입차단설비 설치 2개소		
사업목적	집중호우 시 침수가 빈번한 구간에 차량 및 인명 진입 차단설비를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도로법		제31조 제1항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4,080,617	7,592,153	6,409,153	0	983,000	200,000	3,511,536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4,080,617	7,592,153	6,409,153		983,000	200,000	3,511,536	특교세 200,000
기타		0					0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00,000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401-01 시설비	· 침수취약지역 2개소 진입차단시설 설치 - 운양동 1240-11번지 통로암거 차량진입 차단설비 설치 = 100,000 - 고촌읍 태리 440-2번지 계양천 하부 산책로 진입차단바 설치 = 100,000		

예산요구 사유

- ‘25. 7. ~ 8. 집중호우 시, 운양동 1240-11번지 저지대 통로암거 및 태리 440-2번지 계양천 산책로에 빈번한 침수 발생
- 해당 구간에 원격으로 차단이 가능한 진입차단설비를 설치하여 침수 등 재난 시 차량 및 인명 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고자 함

예산증감 사유

- 집중호우 시, 침수가 빈번한 구간에 차량진입 차단설비 및 진입차단바를 설치하여 안전사고 예방
- 2025년 재난안전수요 특별교부세 교부에 따른 예산 편성 ※ 예산법무과-12601호(2025.8.18.)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8. : 특별교부세 교부
 - 2025. 9. ~ 12. : 진입차단설비 설치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관내 지하차도(운양,장기) 김포도시관리공사 위탁 운영 -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점검(정기,정밀,진단) - 도로시설물 상시유지보수 공사 - 북변교 외 9개소 보수보강공사 등
2024	- 관내 지하차도(운양,장기) 김포도시관리공사 위탁 운영 -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점검(정기,정밀,진단) - 도로시설물 상시유지보수 공사 - 갈산교 통신관로 가이설 공사 - 운양지하차도 자동차단시설 설치 전기공사 등
2025	- 관내 지하차도(운양,장기) 김포도시관리공사 위탁 운영 - 시설물안전법 대상 시설물 점검(정기,정밀,진단) - 도로시설물 상시유지보수 공사 - 계양천1교 신축이음 교체공사 등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268,134	3,433,711	627,953	206,470	
2024	4,964,170	4,209,035	628,355	126,780	
2025	8,020,508	2,799,120	-	5,221,388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로관리과	도로시설팀장 김종필	담당자	시설7급 김승환	전화	4583
-----	-------	------------	-----	----------	----	------

가로·보안등 유지 관리

사업기간	2025. 1. ~ 12.	사업위치	관내 도로
사업규모	가로·보안등 42,317개소에 대한 공공요금 납부		
사업목적	가로등 및 보안등의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적기 납부로 가로·보안등의 원활한 관리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로법	제31조 제1항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	제7조
		시장은 조명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 분기마다 조명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4,824,604	4,932,667	4,632,667	0	0	300,000	108,063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4,824,604	4,932,667	4,632,667			300,000	108,063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300,000	
가로·보안등 유지관리	201-02 공공운영비	· 가로등, 보안등 공공요금 : 경정(365,314,750원*12월)-기정(340,314,750원*12월) ※전기료 상승 및 이관 등에 따른 관리시설 증가	300,000	

□ 예산요구 사유

- 가로등, 보안등의 공공요금 적기 납부로 가로등, 보안등의 원활한 관리

□ 예산증감 사유

- 가로등, 보안등, 신설 및 전기요금의 지속적 상승에 따라 공공요금이 증가하여 기 편성된 예산으로 하반기까지 공공요금 납부 불가
※ 2024년도 공공요금 지출액 : 4,788,585,010
- 2024년 대비 매월 전기요금 자동 납부 건수 증가(14,726건 → 15,194건)
※ 학운5 일반산업단지 가로등 인수 및 범죄취약지 보안등 신규 설치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1. ~ 2025.12. 공공요금 연중 납부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지하차도 및 터널등 에너지절약 사업비 상환금 납부 · 가로등 에너지절약 사업비 상환금 납부(1차,2차,3차,4차,5차) ·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및 양방향제어기 통신료 납부 · 가로등 전기안전진단 실시 : 1회
2024	· 지하차도 및 터널등 에너지절약 사업비 상환금 납부 · 가로등 에너지절약 사업비 상환금 납부(2차,3차,4차,5차) ·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및 양방향제어기 통신료 납부 · 가로등 전기안전진단 실시 : 1회
2025	· 가로등 에너지절약 사업비 상환금 납부(4차, 5차) · 가로등 및 보안등 전기요금 및 양방향제어기 통신료 납부 · 가로등 전기안전진단 실시 : 1회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4,772,344	4,770,968	-	1,376	
2024	4,824,604	4,788,585	-	36,018	
2025	4,632,667	3,016,000	-	1,616,667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로관리과	도로시설팀장 김종필	담당자	공업8급 윤태주	전화	4584
-----	-------	------------	-----	----------	----	------

가로등 유지관리

사업기간	2025. 1. ~ 12.	사업위치	관내 도로
사업규모	가로등 23,124개소, 도로시설물 경관조명 2,500개소		
사업목적	가로등, 경관조명 점검 및 보수, 신규 설치를 통한 교통 및 전기안전사고 예방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로법	제31조 제1항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관리 조례	제7조
		시장은 조명시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매 분기마다 조명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1,712,000	1,892,000	1,712,000	0	0	180,000	18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712,000	1,892,000	1,712,000			180,000	180,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80,000	
가로등 유지관리	206-01 재료비	· 가로등 유지관리 자재 구매 : 경정(750,000원*480개소)-기정(750,000원*400개소)	= 60,000	
	401-01 시설비	· 가로등 및 경관조명 유지관리 연간단가 : 경정(18,256,410원*39공장, 램프교체 480개소 등) -기정(15,179,480원*39공장, 램프교체 400개소 등)	= 120,000	

□ 예산요구 사유

- 노후 및 파손된 가로등 및 경관조명 등을 정비하여 전기안전사고 발생 사전예방
- 노후된 가로등 등기구를 고효율 LED등기구로 교체하여 에너지 절약 및 도로 미관 개선

□ 예산증감 사유

- 가로등 신규 설치와 각종 개발사업의 시설물 인수인계에 따른 관리 수량 증가 및 물가 상승으로 유지관리비 증가
- 가로등 내구연한(10년) 경과에 따른 조도 및 효율 저하로 개선 요구 민원 증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 재료비
 - 2025.07. ~ 2025.12. : 가로등 유지관리 자재구입
 - ▶ 시설비
 - 2025.09. ~ 2025.12. : 하반기 연간단가 공사착공 등 운영
 - 2025.09. ~ 2025.12. : 연간단가 공사 착공 및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LED가로등 설치 및 교체 : 459개 · 노후분점함 및 점멸기 교체 : 8대
2024	· LED가로등 설치 및 교체 : 456개 · 노후분점함 및 점멸기 교체 : 15대
2025	· LED가로등 설치 및 교체 : 293개 · 노후분점함 및 점멸기 교체 : 20대 · 운양지하차도 조도개선공사 발주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040,000	2,029,081	-	10,919	
2024	1,712,000	1,708,745	-	3,255	
2025	1,712,000	1,244,584	-	467,416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로관리과	도로시설팀장 김종필	담당자	공업8급 윤태주	전화	4584
-----	-------	------------	-----	----------	----	------

도로 설해대책 운영(일반운영비)

사업기간		2025. 9. ~ 2026. 3. 15.	사업위치	관내 법정도로
사업규모		제설작업용 민간장비(덤프트럭 43대, 굴삭기3대) 임차 및 제설작업 물품 구입		
사업목적		효율적이고 신속한 제설작업으로 원활한 교통환경 및 도로안전 확보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로법		제31조 제1항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 관리청이 수행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1,422,150	2,073,903	173,900	0	0	1,900,003	651,753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422,150	2,073,903	173,900			1,900,003	651,753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900,003	
도로 설해대책 운영	201-01 사무관리비	· 15톤 덤프트럭 임차용역 : 10,500,000원/월*31대*4월 = 1,302,000 · 5톤 덤프트럭 임차용역 : 8,500,000원/월*9대*4월 = 306,000 · 1톤 덤프트럭 임차용역 : 7,200,000원/월*3대*4월 = 86,400 · 06w 굴삭기 임차용역 : 11,500,000원/월*3대*4월 = 138,000 · 크레인 등 제설작업 준비용 장비 임차 : 1,500,000원/일*13일 = 19,500 · 제설진기지 물품 및 비상근무자 방한용품 등 구입 : 180,000원*4월*4개소 = 2,880 · 제설함, 제설제 보관천막 등 제설작업 보조용품 구입 : 1식 = 9,000 · 제설구역현황도 제작 : 1식 = 5,000	46대	
	201-02 공공운영비	· '24~'25년 읍면마을제설반 트럭유류대지급 : 경정(23,650,000원)-기정(14,000,000원) = 9,650 · '25~'26년 제설차량 유류비 지급 : 423,000원*51대 = 21,573		

□ 예산요구 사유

- 김포시 관내도로 제설을 위한 임차장비 46대 편성(15톤 31대, 5톤 9대, 1톤 3대, 굴삭기 3대)
※ '24 → '25년 명시이월 예산으로 5대 편성(15톤 5대)
- 설해 대책 근무자의 비상근무를 위한 제설기지 물품 및 방한용품 등 책정
- 제설함 비치 민원 증가에 따른 제설함, 제설제 보관용 천막, 홍보용 현수막 등 제설작업을 위한 보조 용품 구입

□ 예산증감 사유

- 신규노선 및 누락노선 제설작업을 위한 임차차량 3대 증가(48대 → 51대)
- 제설대책기간(11.15 ~ 03.15.) 제설장비 4개월 임차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9. : 제설구역현황도 제작
 - 2025.09.~2025.10. : 민간장비 임차 용역 입찰 및 계약
 - 2025.11.~2026.03. : 설해대책기간 민간장비 임차 운용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임차용역 - 임차기간 : 2022.11.15.~2023.03.15.(4개월) - 임차장비 : 15톤 덤프트럭 33대, 5톤 덤프트럭 7대, 굴삭기 3대
2024	· 임차용역 - 임차기간 : 2023.11.15.~2024.03.15.(4개월) - 임차장비 : 15톤 덤프트럭 33대, 5톤 덤프트럭 9대, 1톤 트럭 2대, 굴삭기 3대
2025	· 임차용역 - 임차기간 : 2024.11.15.~2025.03.15.(4개월) - 임차장비 : 15톤 덤프트럭 34대, 5톤 덤프트럭 8대, 1톤 트럭 3대, 굴삭기 3대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831,547	1,061,878	1,651,374	118,295	
2024	3,073,524	1,378,251	1,569,390	125,883	
2025	1,743,290	1,417,861	-	325,429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로관리과	도로환경팀장 강형지	담당자	행정8급 조성혁	전화	4593
-----	-------	------------	-----	----------	----	------

도로 설해대책 운영(재료비)

사업기간		2025. 9. ~ 12.	사업위치	관내 법정도로
사업규모		제설작업용 염화칼슘 3,125톤		
사업목적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제설제를 적기에 확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유지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로법		제31조 제1항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 관리청이 수행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1,000,000	1,000,000	0	0	0	1,000,000	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000,000	1,000,000				1,000,000	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000,000	
도로 설해대책 운영	206-01 재료비	· 염화칼슘 구입 : 320,000원 × 3,125톤 = 1,000,000	1,000,000	

□ 예산요구 사유

- 제설제를 구매하여 자연재난에 대비하기 위한 제설제를 비축하고자 함(현재 제설제 잔량 : 2,043톤, 구매계획량 : 5,200톤, '24~'25 제설대책기간 제설제 사용량 : 6,095톤)

□ 예산증감 사유

- '22~'23년도 4,616톤, '23~24년도 5,812톤 '24~'25년도 6,095톤, 지속적인 제설제 사용량 증가 추세
- 작년 사용량 6,095톤 대비 1,000톤의 여유분을 비축하여 제설제를 최소 7,000톤 확보하고자 함. 현재 제설제 보유량 2,043톤에, 추경 예산으로 3,125톤을 구매하고, 부족분은 재난관리기금으로 구매 추진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9. : 염화칼슘 구매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3년 1회 추경 염화칼슘 1,851톤, 친환경제설제 592톤,구입
2024	- 2024년 2회 추경 염화칼슘 1,800톤, 친환경제설제 1,302톤 구입
2025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729,000	108,065	607,245	13,690	
2024	1,607,245	715,300	891,945	-	
2025	891,945	889,968	-	1,977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로관리과	도로환경팀장 강형지	담당자	행정8급 조성혁	전화	4594
-----	-------	------------	-----	----------	----	------

도로 설해대책 운영(시설비및부대비)

사업기간	2025. 9. ~ 12.	사업위치	관내 법정도로
사업규모	자동염수분사장치 29개소 유지관리 등		
사업목적	자동염수분사장치 유지보수를 통해 선제적 제설작업 실시 및 안전한 도로환경 유지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로법	제31조 제1항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 관리청이 수행한다.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40,000	50,000	0	0	0	50,000	1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40,000	50,000				50,000	10,000	
기타		0					0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50,000	
도로 설해대책 운영	401-01 시설비	· 자동염수분사장치 유지관리 : 1식	= 25,000	
		· 제설제 포대 및 잔여 폐기물 처리 : 1식	= 25,000	

예산요구 사유

- 자동염수살포장치 보수
- 제설대책기간 중 발생하는 제설제 포대 등의 폐기물 처리

예산증감 사유

- 제설제 포대 및 잔여물 처리비용 증가
- 자동염수살포장치 유지관리 비용 증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9. : 제설제 포대 폐기물 처리
 - 2025.09. ~ 12. : 자동염수살포장치 유지관리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염수 교반기 보수
2024	누산IC 자동염수살포장치 이설공사 완료 교량 3개소(하나교, 전호교, 백운교) 자동염수살포장치 전면수리공사 완료 걸포기지 제설제 절개 플랫폼 설치공사 완료 자동염수분사장치 14개소 수리 '23~24년 겨울철 제설작업 종료에 따른 제설제 포대 폐기물 처리
2025	자동염수분사장치 18개소 수리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40,000	3,410	214,067	22,523	
2024	254,067	204,288	40,000	9,779	
2025	40,000	31,136	-	8,864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로관리과	도로환경팀장 강형지	담당자	행정8급 조성혁	전화	4594
-----	-------	------------	-----	----------	----	------

도로 설해대책 운영(자산취득비)

사업기간		2025. 9. ~ 12.	사업위치	관내 법정도로
사업규모		살포기 8대(15톤 1대, 8톤 1대, 5톤 1대, 1톤 5대), 삽날 8대(15톤 1대, 5톤 1대, 트랙터용 6대)		
사업목적		신속한 제설작업을 위해 제설장비를 적기에 확보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유지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로법		제31조 제1항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 관리청이 수행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238,300	570,700	296,000	0	0	274,700	332,4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238,300	570,700	296,000			274,700	332,4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74,700	
도로 설해대책 운영	405-01 자산및물품취득비	· 15톤 살포기 구입 : 경정(63,000,000원*4대)-기정(63,000,000원*3대) = 63,000 · 8톤 살포기 구입 : 55,000,000원*1대 = 55,000 · 5톤 살포기 구입 : 47,000,000원*1대 = 47,000 · 1톤 살포기 구입 : 13,000,000원*5대 = 65,000 · 15톤 삽날 구입 : 경정(13,000,000원*5대+15,000,000원*1대)-기정(13,000,000원*5대) = 15,000 · 5톤 삽날 1대 구입 : 12,000,000원*1대 = 12,000 · 읍면 배부용 트랙터용 삽날 6대 구입 : 2,800,000원*6대 = 16,800 · 제설차량 GPS 단말기 3대 구입 : 300,000원*3대 = 900		

□ 예산요구 사유

- 원활한 제설작업을 위한 제설장비 구매

□ 예산증감 사유

- 제설장비 노후화로 인한 기존 살포기 및 삽날 교체
- 읍·면 마을제설반 트랙터용 삽날 노후화로 인한 삽날 교체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9. : 제설장비 구매
 - 2025.11. : 제설장비 장착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1톤 살포기 2대, 트랙터용 제설삽날 15대 구매 5톤 살포기 2대, 1톤 살포기 2대, 5톤 삽날 2대 구매 포대 절개기 2대 구매
2024	트랙터용 제설삽날 6대 구매 제설용액제조용 약품 탱크 구매 15톤 살포기 2대, 15톤 삽날 1대 구매
2025	고압살수장치 1대 구매 15톤 살포기 3대, 15톤 삽날 2대 구매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75,283	155,760	17,192	2,331	
2024	255,492	177,462	78,030	-	
2025	374,031	236,647	-	137,384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로관리과	도로환경팀장 강형지	담당자	행정8급 조성혁	전화	4594
-----	-------	------------	-----	----------	----	------

25년 우기대비 빗물받이 정비(성립전)

사업기간	2025. 7. ~ 2025. 8.	사업위치	관내 법정도로
사업규모	흡입식 준설(빗물받이, 연결관, 관로 등)		
사업목적	법정도로 내 빗물받이 정비를 통한, 우기철 재해 사전예방 및 시민 안전 확보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로법	제31조 제1항
		제31조(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 등) ①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0	200,000	0	0	0	200,000	200,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0	200,000	0			200,000	200,000	특교세
기타		0					0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00,000	
도로 유지관리	401-01 시설비	· 25년 우기대비 빗물받이 정비 공사 - 200m(빗물받이 준설부피) * 1,000,000원/m(단가) = 200,000,000원 =	200,000	

예산요구 사유

- 기후변화로 인한 집중호우 대비 및 침수 취약지역의 도로 피해 예방

예산증감 사유

- 예산법무과-9061(2025.6.20.)호 관련 25년 우기대비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교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6. : 재난안전관리 특별교부세 자금 교부
 - 2025.07. : 공사 착공
 - 2025.08. : 공사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2025	- 25년 우기대비 빗물받이 정비공사 준공 - 25년 우기대비 빗물받이 추가 정비공사 진행 중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200,000	167,417	-	32,583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로관리과	도로보수팀장 장진혁	담당자	시설8급 이영수	전화	4575
-----	-------	------------	-----	----------	----	------

도로보수원 사무실 시설개선

사업기간	2025. 9. ~ 2025. 11.	사업위치	김포시 감암로 107
사업규모	도로보수원 사무실 셔터 교체 1식		
사업목적	도로보수원 사무실의 노후 시설에 대한 보안 취약 요소 개선 및 원활한 근무여건 조성		
사업구분	■신규 □(연례)반복 □계속비사업	재 원	■자체(100%) □보조
집행계획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의3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0	22,000	0	0	0	22,000	22,0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0	22,000	0			22,000	22,0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2,000	
도로 유지관리	401-01 시설비	· 도로보수원 사무실 셔터 교체 - 2EA(셔터 개수) * 11,000,000원/EA(단가) * = 22,000,000원 =	22,000	

- 예산요구 사유
- 사무실 출입 셔터 고장으로 인해 상시 개방되어 시설 보안에 심각한 취약점 존재

○ 노후 시설개선과 현장 안전관리 강화를 위해 방호벽 보강 및 셔터 교체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도로보수원 창고 사무실 셔터 교체 필요로 신규 사업 편성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 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 사전심사	지방보조금 심의	행사성사업 사전심의	정수물품 배정승인	공유재산 관리계획	정보화사업 타당성심사	민간위탁 의회동의	출자·출연 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일자	2025.11 반영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9. : 공사 착공
 - 2025.11. : 공사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2024	-
2025	-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	-	-	-	
2025	-	-	-	-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로관리과	도로보수팀장 장진혁	담당자	시설8급 이영수	전화	4575
-----	-------	------------	-----	----------	----	------

교통안전시설 설치

사업기간		2025. 1. ~ 12.	사업위치	관내 법정도로
사업규모		관내 도로안전시설물		
사업목적		도로안전시설물 보수·설치를 통한 교통사고 예방 및 도로환경 개선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도로법		제31조 제1항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관리는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도로의 도로관리청이 수행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585,800	580,000	440,000	0	0	140,000	-5,80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585,800	580,000	440,000			140,000	-5,800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40,000	
교통안전시설 설치	401-01 시설비	· 도로안전시설물 연간단가(1~2)구역 : 경정(63,333,330*6공정, 차선분리대 750경간 등) 380,000천원 -기정(4,000,000원*6공정, 차선분리대 500경간 등) 240,000천원 = 140,000		

□ 예산요구 사유

- 노후 및 파손된 도로안전시설물 보수 및 교체 민원 지속적 증가
- 관내 각종 도로안전시설물의 내구 연한 경과에 따른 보수 및 교체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신도시 지역 등 관내 도로안전시설물 내구 연한 경과에 따른 보수 및 재설치 민원 증가
 - 차선분리대의 경우 설치당시 연결형으로 설치되어 있어 전도시 다경간의 보수 필요
- 2025년 본예산 편성시 감액(145,800천원)되어 하반기 민원 처리를 위한 유지보수 예산 추가 필요
 - 기 편성된 예산으로 하반기까지 도로안전시설물 설치 및 보수민원 처리 불가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09. : 2025년 하반기 연간단가 공사 발주 및 착공
 - 2025.12. : 공사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교통안전표지판 개 교체 및 정비 · 차선분리대 300경간 구입 · 설치 및 철거(차선분리대 250경간, 보차도웁스 50경간, 차선규제봉 400개)
2024	· 도로안전시설물 구입 (차선분리대: 280경간, 시선유도봉 2610개, 반사경 400개, 보행자용방호울타리 59경간, 가드레일44m) · 도로안전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 (1구역, 2구역, 하반기)
2025	· 도로안전시설물 구입 (차선분리대: 496경간, 시선유도봉 1000개, 반사경 279개, 보행자용방호울타리 115경간) · 도로안전시설물 유지보수 연간단가 (1구역, 2구역)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275,892	1,202,305	-	73,587	
2024	585,800	576,311	-	9,489	
2025	440,000	282,651	-	157,349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도로관리과	도로시설팀장 김종필	담당자	시설9급 김재현	전화	4586
-----	-------	------------	-----	----------	----	------

2025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사업설명서

차량등록과



정기검사·의무보험제도 확립

사업기간	2025. 01. 0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감암로 125
사업규모	정기검사 지연 및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대상자, 무보험 운행 수사 대상자		
사업목적	과태료 부과 및 무보험 운행 사건 수사로 신뢰받는 정기검사·의무보험제도 확립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자동차관리법	제84조 제4항 제15의5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5의5. 제43조의2제1항에 따른 종합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8조 제3항 제1호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지방세법	제7조 제1항
		취득세는 차량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한다.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188,620	244,960	220,360	0	0	24,600	56,34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88,620	244,960	220,360			24,600	56,340	
기타		0					0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4,600	
정기검사· 의무보험제도 확립	201-01 사무관리비	·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관련 서식 인쇄 : 경정(60,000원*15상자*12월)-기정(60,000원*10상자*12월) · 정기검사 및 의무보험 제도 안내 및 홍보 - 현수막 : 50,000원*14개 - 전단지 : 300,000원	= 3,600 = 1,000	
	201-02 공공운영비	· 일반우편요금 : 경정(219,280,000원)-기정(199,280,000원)	= 20,000	

예산요구 사유

- 이륜차,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자동차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부과 및 징수
- 신속·정확한 고지의무 이행을 통해 세외수입 증대 및 징수율 제고

□ 예산증감 사유

- 이륜차 정기검사 업무 이관에 따른 집행비용(고지서 제작 및 우편요금) 증가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국토교통부령 제1415호)에 따른 제도 홍보 및 안내문, 고지서 경정
- 국내 통상우편 등기취급수수료 300원 인상(김포우체국 영업과-1320, 2025.6.1.시행)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1. ~ 2025. 12. : 검사 유효기간 경과 및 보험 만료 대상자 수시 의무이행 고지, 과태료 사전통지(감경부과) 및 본부과 고지, 과태료 독촉 및 체납자 재산 압류, 법령 개정 사항 안내 및 홍보, 등기우편물 관리 시스템 유지보수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우편발송 내역(1~12월) : 127,063건 · 우편요금 지급내역 : 180,272천원 · 취등록세 고지서 제작 : 5,346천원
2024	· 우편발송 내역(1~12월) : 113,444건 · 우편요금 지급내역 : 164,082천원 ·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 : 6,860천원
2025	· 우편발송 내역(1~8월) : 86,338건 · 우편요금 지급내역 : 144,724천원 · 세외수입 고지서 제작 : 5,098천원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238,120	208,240	-	29,880	
2024	188,620	182,362	-	6,258	
2025	220,360	154,494	-	65,866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차량등록과	차량세무팀장 이재근	담당자	행정6급 장문희 행정8급 천선정	전화	4927 4929
-----	-------	------------	-----	----------------------	----	--------------

무단방치차량 지도단속 업무 지원

사업기간	2025. 01. 0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관내
사업규모	김포시 관내 무단방치차량 및 무보험운행 등 지도단속		
사업목적	무보험 및 방치 자동차에 대한 수사를 통해 안전한 교통환경 조성 및 범죄 발생 위험 예방		
사업구분	☐ 신규 <input checkbox"="" checked="" type="checkbox/>(연례)반복 <input type="/>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12조 (사법경찰 직무 전담 부서 설치)
		이 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소속 관서의 장은 사법경찰 직무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그 직무를 전담하는 부서를 설치할 수 있다.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12,096	16,800	12,096	0	0	4,704	4,704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12,096	16,800	12,096			4,704	4,704	
기타		0					0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4,704	
무단방치차량 지도단속 업무 지원	201-01 사무관리비	· 무단방치 차량 견인비 : 경정(84,000원*200대)-기정(84,000원*144대)	= 4,704	

예산요구 사유

○ 관내 도로 및 사유지에 무단방치된 차량을 강제로 이동하기 위한 견인비 예산 필요

예산증감 사유

- 관내 무단 방치 차량 관련 민원 증가에 따른 견인 차량 대수의 증가
- 폐기된 배달 오토바이, 불법거주 외국인 및 폐업법인 소유 방치차량 증가에 따른 견인비 증액 필요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1. : 무단방치 견인 용역 설계 및 계약
 - 2025. 01. ~ 2025. 12. : 현장 수사 및 견인 용역 실시
 - 2025. 12. : 용역 준공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 무단방치차량 견인 119대
2024	· 무단방치차량 견인 133대 ※ 무단방치차량 견인업무 교통과에서 이관
2025	· 무단방치차량 견인 120대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2,096	8,568	-	3,528	
2024	12,096	10,055	-	2,041	
2025	12,096	6,441	-	5,655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차량등록과	차량특사경팀장 김지선	담당자	행정7급 우종수	전화	4938
-----	-------	-------------	-----	----------	----	------

청사관리

사업기간	2025. 01. 0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감암로 125
사업규모	차량등록과 청사 내		
사업목적	주기적인 청사 관리로 안전하고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 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94조의3(지방자치단체의 청사운영) 제1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자치단체의 청사를 적정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해당조례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조(관리책임) 제1항
		김포시장은 모든 공유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95,096	99,332	92,062	0	6,070	1,200	4,236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95,096	99,332	92,062		6,070	1,200	4,236	
기타		0					0	

□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1,200	
청사관리	201-02 공공운영비	· 전기요금 : 경정(2,350,000원*12월)-기정(2,250,000원*12월) =	1,200	

- 예산요구 사유
- 청사 시설 운영에 필요한 전기요금 필수 지출에 따른 예산 요구
 - 청사의 효율적인 시설 운영을 위한 공공요금 지급 및 시설물 유지보수 필요
- 예산증감 사유
- 전년 대비 전기 사용량 증가(월평균 473kw)에 따른 전기요금 증가분 반영
 - 2025년 12월중 공공운영비 소진 예상으로 예산부족분 요구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5. 01. ~ 2025. 12. : 청사 유지관리 용역 수수료 및 공공요금, 청사 청소원 임금 지급
 - 2025. 04. : 청사 진입로 배수공사 실시
 - 2025. 08. : 청사 승강기 보수공사 실시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2023	- 무인경비/전기/소방/승강기 안전관리대행 용역 계약 및 시설관리 - 청사 운영관리를 위한 소모품 구매 - 청사 제초작업 실시(3회) 및 청사청소원(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급 - 청사 외벽 방수공사 완료
2024	- 무인경비/전기/소방/승강기 안전관리대행 용역 계약 및 시설관리 - 청사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매 - 청사 제초작업 실시(3회) 및 청사청소원(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급 - 청사 승강기 CCTV 공사 - LED 옥외간판 교체 설치
2025	- 무인경비/전기/소방/승강기 안전관리대행 용역 계약 및 시설관리 - 청사 운영을 위한 소모품 구매 - 청사 제초작업 실시(1회) 및 청사청소원(기간제근로자) 인건비 지급 - 청사 진입로 배수 공사 및 승강기 보수공사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126,155	123,220	-	2,935	
2024	95,096	93,082	-	2,014	
2025	98,132	68,550	-	29,582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차량등록과	차량행정팀장 심유섭	담당자	행정8급 김민경	전화	4902
-----	-------	------------	-----	----------	----	------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 운영

사업기간	2025. 01. 01. ~ 2025. 12. 31.	사업위치	김포시 감암로 125
사업규모	차량등록과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 1대		
사업목적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를 위해 설치운영중인 급속 충전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를 통해 이용자의 전기차 충전 편의성 증대		
사업구분	☐ 신규 ☒ (연례)반복 ☐ 계속비사업	재원	☒ 자체(100%) ☐ 보조
집행계획	☐ 1/4분기 ☐ 2/4분기 ☐ 3/4분기 ☐ 4/4분기 ☒ 연중		
법 적 근 거	법령 위임규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4조제1항(공유재산의 관리와 사무의 위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되, 소속 공무원에게 위임하여 공유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고,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위임하여 그 재산을 관리·처분하게 할 수 있다.	
	해당조례	김포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17조(관리 및 처분)
		재산관리관은 관리하는 행정재산의 유지 및 보수를 철저히 하고 환경을 정비하여 행정수요에 대처하도록 하여야 한다.	

세출예산 요구 (단위 : 천원)

구분	2024년 최종예산액 (A)	2025년 예산액				2025년 3회 추경 요구액 (F)	2024년 최종예산 대비 증감 (B-A)	비고
		최종예산액 (B=C+D+E+F)	본예산 (C)	1회 추경 (D)	2회 추경 (E)			
계	8,480	5,520	7,680	0	0	-2,160	-2,960	
국비		0					0	
도비		0					0	
시비	8,480	5,520	7,680			-2,160	-2,960	
기타		0					0	

세출요구액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통계목	사업내용 및 산출내역	3회추경 요구액	비고
합 계			-2,160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 운영	201-02 공공운영비	· 급속충전기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 경정(260,000원*12월)-기정(440,000원*12월)	= -2,160	

예산요구 사유

- 차량등록과 주차장에 설치된 전기자동차 급속충전기의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차량등록과를 방문 하는 전기자동차 이용객에게 편의 제공

예산증감 사유

- 전년 대비 전기자동차 충전시설 이용량 감소에 따른 전기요금 예산 감액

□ 사전절차 이행 여부

구분	중기지방재정계획	투자심사	용역과제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	행사성사업사전심의	정수물품배정승인	공유재산관리계획	정보화사업타당성심사	민간위탁의회동의	출자·출연의회의결
대상여부	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비대상
결과	반영	-	-	-	-	-	-	-	-	-
일자	2024.11 반영	-	-	-	-	-	-	-	-	-

□ 사업 추진계획

- 추진 경위 및 향후계획
 - 2024. 12. :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위탁계약 체결(전기차충전사업자)
 - 2025. 01. ~ 2025. 12. : 전기자동차 급속충전시설 1대 유지·관리

□ 최근 3년 추진실적 및 집행현황 (2025. 8. 22. 기준)

○ 최근3년 추진실적

2023	
2024	- 충전시설 위탁관리비용 지급(1~12월) - 충전기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납부(1~12월)
2025	- 충전시설 위탁관리비용 지급(1~7월) - 충전기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납부(1~8월)

○ 최근3년 결산현황 (단위 : 천원)

회계연도	예산현액 (예산액+전년도이월액)	집 행 액	다음연도 이월액	집행잔액	비고
2023	-	-	-	-	
2024	8,480	6,740	-	1,740	
2025	7,680	2,763	-	4,917	8.22.기준 집행현황

□ 사업부서 및 담당자

부서명	차량등록과	차량행정팀장 심유섭	담당자	행정8급 김민경	전화	4902
-----	-------	------------	-----	----------	----	------